

기도의 행위에 대한 로마사회의 엇갈린 견해가 조명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드라마 자체의 명암과 함께 잘 배색되어 있다. 2권의 「로마절반(Half Rome)」은 기도의 편에 서서 피에트로와 비올란테의 시체가 전시되어 있는 산 로렌조성당의 제단 앞으로 인도한다. 시체의 모습을 보기 위해 몰려든 군중 때문에 2층의 오르간 연주대가 무너져 내려 앉고 여자들은 질식하는 소동이 벌어진다. 군중 속에 70세의 루카 시니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자상(刺傷)감식의 전문가이다.

「로마 절반」 군중은 기도가 속아서 결혼한 것이 분명하고 콤파르리니 내외가 폼필리아를 사주하여 기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재물을 훔쳐 “품위있는 크리스천” 정부, 카폰사치와 함께 도주하도록 했다고 믿는다. 비록 폼필리아가 죄의 대가로 수도원에 감금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간통한 젊은 사제 카폰사치의 ‘의복과 보호’ 아래 사랑의 도피처가 제공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로마 절반」은 분노의 질문을 던진다. “그대 자신에게 물어보라. 과연 그대는 이 모욕,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3권의 「나머지 로마 절반(Other Half Rome)」은 콤파르리니 가족의 편이다.

로렌조군중의 격앙된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지극히 정제된 목소리로 “새하얀 성안나병원”의 풍경을 전한다. 죽어가는 어린 신부 폼필리아 곁을 이따금씩 찾은 것이라고는 바람, 사제, 의사 그리고 변호사뿐이다. 「나머지 로마 절반」이 구성한 사건의 전말은 다르다. 비올란테는 악의 시궁창에서 폼필리아를 건져낸 것이다. 그녀를 양녀로 입적시킨 것은 고귀한 인간애의 발로인 것이다. 오히려 50세의 늙은이 기도는 자신의 신분과 재력을 속이고 “12살의 신품”을 구입하려 했던 것이다. 피에트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올란테는 이 비도덕적인 결혼을 주선했다. 결혼 후 기도는 아내와 함께 장인 장모를 자신의 무대인 아래쪽에 데려갔다. 그러나 박해를 견디다못한 부부는 법적으로는 기도의 소유인 어린 딸을 “사자의 먹이로 버려둔 채” 로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폼필리아의 간통은 허위라는 것이 이 목소리의 주장이다. 폼필리아가 보냈다는 연애편지는 기도가 위조한 것이다. 폼필리아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른다. 그녀에게 젊은 카폰사치는 고해의 상대이자 신의 뜻을 전해 받는 성직자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도의 잔혹함에 대한 구제의 탄원을 주교에게 냈으나 묵살당하자 믿고 의지한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인 것이다. 또한 크리스

마스 이브에 콤파르리니를 찾았을 때 살해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기도의 주장과는 달리 건달패를 대동한 사실에서 보듯이 이미 확정된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다. 산 로렌조군중의 목소리와는 달리 「나머지 절반」의 주장은 사건의 전모가 불명하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법원의 사실인정이 힘들다고 예상하면서도 화자는 폼필리아의 무고함을 믿는다. “이야기… 믿기 힘들으나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 그 누가 감히 이렇다고 확신할 수 있으리?”

4권의 「제3의 목소리(Tertium Quid)」는 상류 귀족사회의 목소리다. 이 목소리에 의하면 콤파르리니 등은 로마의 신분구조로 볼 때 기껏해야 중간층에 속할 따름이다. 따라서 이들의 추문과 살인사건은 진짜 상류사회의 더없이 좋은 파한거리인 것이다. 중산층 여인이 흔히 저지르는 간통의 이면에 담긴 사연과 동기 그리고 사회적 평판이 폼필리아의 살인 그 자체보다도 더욱 가십거리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번에는 이런 여자 하나가 검둥이 사환과 일을 벌이다 잡혔는데 그녀의 주장인즉 남편의 성자와 같은 태도 때문에 간통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등등.

「제3의 목소리」의 토운은 선명한 두 주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빅토리아조의 귀족저택에서 벌어진 만찬 후의 노변잡담을 연상케 한다. 브라우닝 자신이 지극히 익숙한 파티의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최초 4장과 마지막 장 사이에 기도, 폼필리아, 카폰사치 등 주역 인물들의 성격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덧붙여 교황과 두 사람의 변호사의 주장도 시어로 정리되어 있다. 판결에 대한 기도의 항소이유서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신비의 전율 바로 그것이다. 빅토르 위고의 「사형수 최후의 날」이나 조감제의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도 박진감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문학적 가치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문학사에서 〈반지와 책〉의 업적은 사실적 기법과 심리묘사의 성공적 결합이라고 한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본 이 작품은 법과 인간의 영혼의 문제를 다룬 대작 중의 대작이다.

## 2)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뵘도르 도스토예프스키(1821~81)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1880)<sup>11)</sup>은 법

11) 이 글에서의 논의는 김학수 역 범우비평판 세계문학선 제20권, 범우사(1986) 및 영문판 *The Brothers Karamazov*, (Andrew H. MacAndrew trans, 1971) Bantam

률소설로 규정지어도 무리가 없다. 전체의 5분의 1이 드미뜨리 까라마조프의 심문과 재판에 관해 다루고 있다. 분량으로 볼 때 이는 『죄와 벌』에서의 라스콜리니코프의 경우를 능가한다.

이 소설은 기술적으로 결합된 두 개의 별개의 소설로 분해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미모의 그루셴카를 두고 아버지 뽀도르와 장남 드미뜨리간에 벌어지는 애정과 탐정소설이다. 자신이 사생아이자 하인인 스메르자코프에 의한 뽀도르의 살인과 혐의자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드미뜨리의 체포와 재판 과정이 주된 줄거리이다. 제2의 소설 중의 소설은 종교철학의 부분이다. 후일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된 장르이기도 하다. 이 부분에서의 주인공은 뽀도르의 차남 이반, 삼남 알료샤, 그리고 알료샤의 사부인 조시마 장로의 3인이다. 여기에 소년 알류사와 이반의 관념이 창조한 대심문관(大審問官, Grand Inquisitor)이 조역으로 등장한다. 전자를 사실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양자 중에 후자가 더욱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보다 사실적이다. 물론 전자가 후자의 부분에서 전개되는 철학적인 논의의 핵심을 제공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전자없이 후자의 성공적인 전개가 불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양자는 상호 의존적이다. 이반의 무신론과 여기에서 파생하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소신이 스메르자코프의 뒤뜰린 지성을 사주하여 살인을 일으킨다. 알류샤의 아버지에게 대해 드미뜨리가 가하는 모욕(알류샤의 비극적인 죽음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에 대한 벌로 드미뜨리는 비록 오류의 판결을 통해서이지만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신의 계획의 일부이며 드미뜨리의 속죄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소설의 철학적인 전개는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어찌하여 선량한 인간, 특히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받는 고통을 외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의문에 대답할 수 없는 이반은 무신론자가 되고 결국에는 정신병자가 된다. 무고한 어린아이의 고통은 알료샤 소년의 이야기로 극화된다. 종교와 신에 대한 수많은 도전의 질문은 살아있는 성자로 절대적인 승앙을 받던 조시마 장로가 사망과 동시에 시신이 썩는 장면에서 대극화된다. 이 사건을 전기로 알료샤의 신앙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끌려서가 아니라, 자유의사에 기한 선택에 의해서 주도된다.

Books을 대본으로 하였다.

법적 절차는 주로 소설의 “사실적 부분”에 해당되지만 순수히 사실적인 선택만 따는 것은 아니다. 드미뜨리는 법적으로는 아버지의 살인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도덕적으로는 이반과 함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원했고 실제로 그를 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살해의사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 이반은 의도적으로 또는 은연중에 스메르자코프에게 영향을 미쳐 그가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였다. 드미뜨리의 유죄선고는 자신의 영혼 해방의 길목에서 일어난다.<sup>12)</sup>

법적 절차의 장면과 소설의 철학적 메시지의 또다른 결합의 예는 등장인물의 언행에서 나타난 주장, 즉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라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를 예방하며 따라서 신은 불필요한 존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드미뜨리의 재판 자체가 반증의 답을 제공해준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진범은 자살로 소추를 면한다. 드미뜨리가 유죄판결을 받는 바로 그날 스메르자코프는 자살한다. 그는 신의 존재나 영생을 믿지 않기에, 아무것도 잃지 않고 비참한 현실을 탈피할 수 있는 수단이 자살인 것이다. 그의 자살은 드미뜨리의 운명을 결박해두는 수단이기도 하다. 진범인 자신의 죽음으로 진실이 밝혀져 드미뜨리의 무고함이 입증될 기회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독자는 세속의 정의의 시스템이 불완전함을 인식하게 된다.

합리적이긴 하나 결과적으로는 무익한 법제도와 추상 같은 영적 정의와의 대비 또한 사실적 요소와 철학적 메시지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영혼의 정의는 알료샤나 조시마 장로와 같은 성직자의 경우는 물론 드미뜨리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잔혹, 열정, 비탄, 눈물로 점철된 소설의 전과정을 통해 법제도와 절차는 인간성과 합리성의 보루로 남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의 법의 지위는 『이방인』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뛰어난 법률가인 드미뜨리의 변호사 페투코비치도 드미뜨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배심도 피고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편견에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장소인 호텔에서의 예비심문이나 재판 그 자체의 진행과정은 오늘날 사법선진국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공정한 것이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을 상회함을

12) Richard A. Posner, Law and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1988) pp. 167~171 참조

즉시 감지할 수 있다. 드미뜨리의 유죄평결은 배심의 적대적 편견 때문이 아니라 축적된 증거가 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완벽하게 그를 함정에 몰아넣은 스테르자코프는 이미 자살한 몸이다. 재판절차가 공정했을 뿐만 아니라 선고된 형인 20년 징역도 야간주거침입 절도와 존속살해라는 죄명과 범죄의 상황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는 법제도에 대한 암시적인 비판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은 소설이 씌어진 1880년대의 러시아의 법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정의의 시스템으로서의 법제도 그 자체에 대한 것이다. 법제도는 진실의 파악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검사와 변호사의 최후변론에 제시되는 드미뜨리의 성격묘사도 그의 본질적 심성의 파악에 있어 실패한 것이다. 이러한 본질 이탈은 소설의 종교적 메시지와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 도스토예프스키에게 있어서 신의 자비와 인간의 고통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원리는 신의 권위(조시마 장로의 죽음에 기대하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도 이성적 논리도 아니고(이반은 이를 추구하다 실패한다) 오로지 인간에게 시련과 고통을 줌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보다 큰 신의 참 뜻을 알려고 하는 경건한 믿음에 있는 것이다. 법이 이성에 기초함에도 불구하고(아니면 이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태도는 『이방인』의 태도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간의 한계에 대한 진솔한 인정과 종교적 가치의 추구를 설교하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서울대 법대 교수]

## 우리 말로 바로잡아 본 헌법

이 오 덕

헌법은 그 나라가 서 있는 근본조건이 되는 커다란 원칙을 밝혀놓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문장이 중국글자를 섞어서 썼을 뿐 아니라 말법이 일본말법으로 되어 있는 대문이 많아서 국민 모두가 읽을 수 없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대문이 많다. 여기에 헌법을 쉬운 우리 말 우리 글로 다듬고 바로잡아본 까닭이 있다. 헌법을 이와 같이 우리 글 우리말로 고쳐 쓰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왜 법을 만들고 법 조문을 글로 쓴 사람들이 쉬운 우리말로 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이라도 '헌법을 쉬운 말로 써놓으면 법에 권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말과 우리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나는 본다.

그런데, 이 정도로 쉽게 다듬어놓은 것도 이것이 당장 법률가사회나 정치인들에게 받아들여지리라고 믿지는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사당에서 명패조각꾼이 중국글자로 쓰기를 고집하는 국회의원들이 쉬운 우리말로 적어놓은 헌법을 다시 국회에 내어놓아서 통과시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헌법 개정 때는 좀더 쉬운 우리말로 쓰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일반 백성들에게 읽히고 싶은 것이다. 쉽게 써놓은 우리 헌법을 많은 국민들이 읽게 되고, 그래서 우

리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민주정치란 어떻게 해야 하는 정치인가를 모든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참된 민주사회를 만들어가는 일도 이렇게 해서 비로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조문을 우리말로 다듬는 일은 대강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하였다.

첫째, 어려운 중국글자말(한자말)을 우리말로 바꾸었다.

(보기) • 島嶼 → 섬

둘째, 중국글자로 쓰면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을, 읽는 그대로 한글로 적을 경우 그 뜻이 얼른 잡히지 않는 말이 있다. 이런 말은 모두 우리말로 고쳤다.

- (보기) • 公共福利 → 사회일반의 행복과 이익
- 人類共榮 →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 데에
- 國號 → 나라 이름
- 在外國民 → 외국에 있는 국민
- 總綱 → 으뜸 강령

셋째, 대체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중국글자말도 더 쉽고 깨끗한 우리말이 있을 때는 우리 말로 적었다.

- (보기) • 均衡히 → 고르게
- 확보할 → 마련할
- 기타 → 그밖

넷째, 바꾸어 쓸 우리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중국글자말을 읽는 그대로 한글로 적어도 말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두었다.

- (보기) • 法統 → 법통
- 抗拒 → 항거
- 民主理念 → 민주이념
- 團結 → 단결

다섯째, 법조문에 자주 나오는 ‘—的’이란 말은 널리 쓰이고 있지만 일본식 말이 뚜렷하기에 다음과 같이 우리말로 바로잡았다.

- (보기) • 侵略的 戰爭 → 침략하는 전쟁
- 民主的이어야 → 민주다워야
- 民主的 基本秩序 → 민주 기본질서
- 政治的 中立性 → 정치 중립성, 정치의 중립성
- 政治的 意思形式 → 정치에 대한 생각을 이뤄가는 일에

여섯째, 법조문에 자주 나오는 ‘—에 의하여’도 널리 쓰이고 있는 말이지만 일본식 글말임이 뚜렷하기에 우리말로 바로잡았다.

- (보기) • 憲法에 의하여 → 헌법을 따라서
- 國民投票에 의하여 → 국민투표에 따라서
- 審判에 의하여 → 심판으로
- 法律에 의하여 → 법률에서
- 法官에 의하여 → 법관에게
- 바에 의하여 → 바를 따라서, 바에 따라서, 데에 따라서, 대로

일곱째, ‘—에 있어서’도 일본말법임기에 우리말로 바로잡았다.

- (보기) • 모든 領域에 있어서 → 모든 영역에서
- 正式裁判에 있어서 → 정식재판에서

여덟째, ‘등(等)’도 일본식 말법임기에 그대로 둘 수 없었다.

- (보기) • 無罪推定등 → 무죄 추정 따위
-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등, 言論·出版에 의한 被害賠償 →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언론·출판에 따른 피해 배상

아홉째, ‘및’이란 말도 일본글을 직역하는 데서 쓰는 말임기에 우리 말 토(과)나 ‘그리고’란 말로 고쳐 썼다.

- (보기) • 教育財政 및 教員의 地位 → 교육재정과 교원의 자리
- 自主의인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 → 스스로 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열째, '者'는 모두 '사람'으로 고쳤다.

- (보기) • 拘禁되었던 者가 → 구금되었던 사람이

열한째, '된다'라는 움직씨의 입음꼴도 일본말을 따라서 쓰는 경우가 많기에 여러 곳에서 바로잡았다.

- (보기) • 통지되어야 → 알려야
-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 無罪로 推定된다 → 무죄로 추정한다
- 보장된다 → 보장한다

열두째, 매김자리토(관형격조사) '의'를 없앤 경우도 많다.(우리 말로 쓰니 '의'토가 저절로 없어진 것)

- (보기) • 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 부당한 장기 구속
- 適法의 審査를 → 법에 맞는 심사를
- 有罪의 判決이 → 죄가 있다는 판결이
- 勤勞의 權利 → 일할 권리
-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하여
- 納稅의 義務 → 세금을 바치는 의무

이밖에, '勤勞한다'를 '일한다'로 쓰고 '勤勞者'를 '일하는 사람'이나 '일꾼'으로 쓰고, '賃金'을 '품삷'이라 쓴 데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다고 볼 분들이 더러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일한다' '일꾼' '품삷'이란 말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있는 말이니, 이런 살아있는 말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아무튼 이와 같이 많이 고치기는 하였지만 법조문에서 본래 표현한 뜻은

조금도 다치거나 달리 풀이될 수 있게 쓰지는 않으려고 힘썼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더 깨끗한 우리말로 다듬지 못한 편도 있게 된 듯하다. 더구나 헌법 '앞글'은 너무 긴 하나의 글월이 되어 있어서 매우 읽기가 거북한데, 이것을 알기 쉬운 글로 하자면 마땅히 몇 토막으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자면 보태고 깎고 해야 할 말이 있어야 하겠기에 법조문을 함부로 고치는 일도 조심이 되어 그만두었다. 그러다보니 낱말 고치는 일도 이 '앞글'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다.

이렇게 다듬어놓은 헌법을 보고 잘못 쓴 데나 좀더 잘 바로잡아야 할 말이 있으면 누구든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 널리 국민들에게 읽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맨 처음 일은 내가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온 국민이 고치고 다듬어 그야말로 백성이 만든 백성의 헌법으로 된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는가.

### 大韓民國憲法 대한민국헌법

#### 前文 앞글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맞나는 우리 大韓民國은 3·1運動으로 建立된 大韓民國臨時  
오랜 역사 전통 대한민국 운동 새운 대한민국임시

政府의 法統과 不義에 抗拒한 4·19民主理念을 계승하고, 祖國의 民主改革과 平和的  
정부 법통 불의 항거 민주이념 이어받고 조국 민주개혁 평화

統一의 使命에 입각하여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공고히 하고, 모든  
통일 사명을 따라서 정의·인도 동포사랑으로써 겨레 단결 튼튼히

社會的 弊習과 不義를 타파하며, 自律과 調和를 바탕으로 自由民主의 基本秩序를 더  
사회적 나쁜 버릇 불의 못함을 깨뜨리며 자율 어울림 자유민주의 기본질서

욱 확고히 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균등히  
튼튼히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사람마다 기회 고르게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 自由와 權利에 따르는 責任과 義務를 완수하  
능력 가장높게 펼쳐내게 자유 권리 책임 의무 다하게

게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世界平和와  
 國民생활을 고르게 높이고 온전한 세계평화  
人類共榮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안전과 자유와 幸福을 영원히  
 인류가 함께 번영하는데에 자손 안전 자유 행복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年 7月 12日에 制定되고 8次에 걸쳐 改定된 憲法을 이  
 마련할 년 월 일 제정하고 차 개정한 헌법  
 제 國會의 議決을 거쳐 國民投票에 의하여 改正한다.  
 국회 의결 국민투표 따라서 고친다.

1987年 10月 29日  
 년 월 일

第1章 總綱  
 제1장 으뜸 강령

第1條 [國號·政體·主權] ①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제1조 나라이름 정치형태 주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②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 국민에 권력 국민에서

第2條 [國民의 要件·在外國民의 保護義務] ①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은 法  
 제2조 국민 요건 외국에 있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 대한민국 국민 법  
 律로 정한다.  
 른

② 國家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在外國民을 보호할 義務를 진다.  
 국가 법률 바를 따라서 외국에 있는 국민 의무

第3條 [領土] 大韓民國의 領土는 韓半島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제3조 영토 대한민국 영토 한반도 그에 딸린 섬으로

第4條 [統一政策] 大韓民國은 統一을 指向하며, 自由民主의 基本秩序에 입각한 平  
 제4조 통일정책 대한민국 통일 지향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를 따른  
 和의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 통일정책 세우고

第5條 [侵略的 戰爭의 否認·國軍의 使命, 政治의 中立性] ① 大韓民國은 國際平和  
 제5조 침략 전쟁 부인 국군 사명, 정치 중립성 대한민국 국제평화를  
 의 유지에 노력하고 侵略的 戰爭을 否認한다.  
 지켜가도록 힘쓰고 침략하는 전쟁 부인

② 國軍은 國家의 安全保障과 國土防衛의 神聖한 義務를 수행함을 使命으로 하며,  
 국군 국가 안전보장 국토방위 거룩한 의무 다함 맡은 일로  
 그 政治的 中立性을 준수한다.  
 정치의 중립성 지킨다.

第6條 [條約·國際法規의 效力·外國人의 法的 地位] ① 憲法에 의하여 체결·公布  
 제6조 조약 국제법규 효력·법을 따른 외국인의 지리 헌법을 따라서 공포  
 된 條約과 一般의으로 승인된 國際法規는 國內法과 같은 效力을 가진다.  
 조약 일반 국제법규 국내법 효력

② 外國人은 國際法과 條約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位가 보장된다.  
 외국인 국제법 조약 바를 따라서 지리

第7條 [公務員의 地位·責任·身分, 政治的 中立性] ① 公務員은 國民全體에 대한  
 제7조 공무원 지리·책임·신분, 정치 중립성 공무원 국민전체를 위해  
 奉仕者이며, 國民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일하는 사람 국민 책임

② 公務員의 身分과 政治的 中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 신분 정치 중립성 법률 바를 따라서 보장한다.

第8條 [政黨] ①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  
 제8조 정당 정당 설립 자유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② 政黨은 그 目的·組織과 活動이 民主的이어야 하며,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정당 목적·조직 활동 민주다워야 국민이 정치에 대한 생각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組織을 가져야 한다.  
 조직

③ 政黨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으며, 國家는 法律이 정하  
 정당 법률 바를 따라서 국가 국가 법률  
 는 바에 의하여 政黨運營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할 수 있다.  
 바를 따라서 정당운영 자금 보조

④ 政黨의 目的이나 活動이 民主的 基本秩序에 違背될 때에는 政府는 憲法裁判所에  
 정당 목적 활동 민주적 기본질서 어긋날 정부 헌법재판소  
 그 解散을 提訴할 수 있고, 政黨은 憲法裁判所의 審判에 의하여 解散된다.  
 해산 제소 정당 헌법재판소 심판에 따라서 해산

第9條 [傳統文化와 民族文化] 國家는 傳統文化의 계승·발전과 民族文化의 暢達에  
 제9조 전통문화 민족문화 국가 전통문화 민족문화 창달  
 노력하여야 한다.  
 힘써야

第2章 國民의 權利와 義務  
 제2장 국민 권리 의무

第10條 [人間的 尊嚴性과 基本人權保障]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의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제10조 인간 존엄성 기본인권 보장 국민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  
행복 추구 권리 국가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 의무

第11條 [國民의 平等, 特殊階級制度의 否認, 榮典의 效力] ① 모든 國民은 法 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 生活的 모든 領域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 국민 평등 특수계급 제도 부인 영전 효력 국민 법  
평등 성별·종교 또는 사회 신분을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 영역에서

② 社會的 特殊階級의 制度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形態로도 이를 創設할 수 없다.

사회의 특수계급 제도 인정하지 형태 창설

③ 勳章 등의 榮典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效力이 있고, 어떠한 特權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훈장과 같은 휘장 사람 효력 특권

第12條 [身體의 自由, 自白의 證據能力] ① 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強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 자유 자백 증거능력 국민 신체 자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법률 법에 맞는 절차를 따르지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② 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不利한 陳述을 強要당하지 아니한다.

국민 고문 형사상 불리 진술 강요

③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 이상

체포·구속·압수 수색 법에 맞는 절차를 검사가 신청하여 법관 영장 내모아야 현행범인 장기 3년

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申訴할 수 있다.

형이 되는 죄 저지르고 도망하거나 증거가 없어질 뒤 열

④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체포 구속 변호인 도움 권리 형사피고인 변호인 법률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따라서 국가 변호인

⑤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의 理由와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가 있음을 告知받지 아니하고는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하지 아니한다.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者의 家族 등 法律이 정하는 者에게는 그 理由와 日時·場所가 지체없이 通知되어야 한다.

체포 구속 변호인 도움 권리 알리지 할 수 없다. 체포 구속 사람 가족이나 그밖에 법률 사람 까닭과 때와 곳을 알려야

⑥ 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適法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체포 구속 법에 맞는 심사 법원 청구 권리

⑦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束의 不當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方法에 의하여 自意로 陳述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

피고인 자백 고문 폭행 협박 부당한 장기 구속 속임수 그밖 정식재판에서 피고인

유로 處罰할 수 없다.

자백 불리 단 하나의 유죄 처벌

第13條 [刑罰不溯及, 一事不再理, 溯及立法의 制限, 連坐制禁止] ① 모든 國民은 行爲時의 法律에 의하여 犯罪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訴追되지 아니하며, 동일 行위를 했을 때 法律에서 범죄 소추 같은 한 犯罪에 대하여 거듭 處罰받지 아니한다.

범죄 범죄 처벌

② 모든 國民은 溯及立法에 의하여 參政權의 制限을 받거나 財產權을 剝奪당하지 아니한다.

국민 소급입법 따라 참정권 재산권 빼앗기지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遇를 받지 아니한다.

第14條 (居住·移轉의 자유) 또는 국민은 居住·移轉의 자유를 가진다.

第15條 (職業選擇) 모든 국민은 職業選擇의 자유를 가진다.

第16條 (住居의 保障) 모든 국민은 住居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住居에 대한

押收나 搜索을 할 때에는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令狀을 제시하여야 한다.

第17條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모든 국민은 私生活의 秘密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8條 (通信의 秘密) 모든 국민은 通信의 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第19條 (良心의 自由) 모든 국민은 良心의 자유를 가진다.

第20條 (宗教의 自由) ① 모든 국민은 宗教의 자유를 가진다.

② 國教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第21條 (言論·出版·集會·結社의 自由 등, 言論·出版에 의한 被害賠償) ① 모든 국민은 言論·出版의 자유와 集會·結社의 자유를 가진다.

② 言論·出版에 대한 許可나 檢閱과 集會·結社에 대한 許可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通信·放送의 施設基準과 新聞의 機能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④ 言論·出版은 他人의 名譽나 權利 또는 公衆道德이나 社會倫理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言論·出版이 他人의 名譽나 權利를 침해한 때에는 被害者는 이에 대한 被

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2條 (學問·藝術의 自由와 著作權의 保護) ① 모든 국민은 學問과 藝術의 자유를 가진다.

② 著作者·發明家·科學技術者와 藝術家의 權利는 法律로써 보호한다.

第23條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① 모든 국민은 財産權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

界는 法律로 정한다.

② 財産權의 행사는 公共福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에 의한 財産權의 收用·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은 法律로써 사회일반의 필요에 따라 財産權을 쓰거나 거두어 쓰거나 제한을 하는 일, 그리고 補償을 하는 일은 하되, 정당한 補償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4條 (選舉權)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選舉權을 가진다.

第25條 (公務擔任權)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務擔任權을 가진다.

第26條 (請願權) ① 모든 국민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機關에 文書로 請願할 權利를 가진다.

② 國家는 請願에 대하여 審査할 義務를 진다.

第27條 (裁判을 받을 權利, 刑事被告人의 無罪推定 등) ① 모든 국민은 憲法과 法

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 ② 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領域 안에서는 중대한 軍士上 機  
 군인 군무원 국민 대한민국 영역 군사상
- 密·哨兵·哨所·有毒飲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中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 공급 포로 군용물 죄 법률
- 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비상계엄 선포 군사법원 재판
- ③ 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국민 재판 권리 형사피고인 까닭이
-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없다면 공개재판 권리
- ④ 刑事被告人은 有罪의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無罪로 推定된다.  
 형사피고인 죄가 있다는 판결 무죄 추정한다.
- ⑤ 刑事被害者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件의 裁判節次에서 陳述할 수  
 형사피해자 법률 바를 따라 그 사건 재판절차 털어말할
- 있다.

第28條 [刑事補償] 刑事被疑者 또는 刑事被告人으로서 拘禁되었던 者가 法律이 정  
 제28조 형사보상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구금 사람이 법률에서

하는 不起訴處分을 받거나 無罪判決을 받을 때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에  
 정한 불기소처분 무죄판결 법률 바를 따라 국가

정당한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보상 청구

第29條 [公務員의 不法行爲와 賠償責任] ①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받  
 제29조 공무원 불법행위 배상책임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

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정당한 賠償을 請求할  
 국민 법률 바를 따라서 국가 공공단체 배상 청구

수 있다. 이 경우 公務員 자신의 責任은 免除되지 아니한다.  
 공무원 책임 면제

② 軍人·軍務員·警察公務員 기타 法律이 정하는 者가 戰鬪·訓練 등 職務執行과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그밖에 법률 사람이 전투 훈련 따위 직무집행

관련하여 받은 損害에 대하여는 法律이 정하는 報償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  
 손해 법률 보상 밖에 국가 공공단체 공무원

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  
 직무상 불법행위 말미암은 배상 청구

第30條 [犯罪行爲로 인한 被害救助] 他人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生命·身體에 대한  
 제30조 범죄행위 말미암은 피해 구조 다른 사람 범죄행위 말미암아 생명 신체

被害를 받은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로부터 救助를 받을 수 있다.  
 피해 국민 법률 데에 따라서 국가 구조

第31條 [教育을 받을 權利·義務 등] ① 모든 國民은 能力에 따라 균등하게 教育을  
 제31조 교육 권리 의무 따위 국민 능력 고르게 교육

받을 權利를 가진다.  
 권리

② 모든 國民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적어도 初等教育과 法律이 정하는 教育을 받  
 국민 자녀 초등교육 법률 교육

게 할 義務를 진다.  
 의무

③ 義務教育은 無償으로 한다.  
 의무교육 무상

④ 教育의 自主性·專門性·政治的 中立性 및 大學의 自律性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교육 자주성 전문성 정치 중립성과 대학 자율성 법률 바를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보장한다.

⑤ 國家는 平生教育을 振興하여야 한다.  
 국가 평생교육 진흥

⑥ 學校教育 및 平生教育을 포함한 教育制度와 그 운영, 教育財政 및 敎員의 地位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교육제도 교육재정과 교원 지위

에 관한 基本의인 사항은 法律로 정한다.  
 기본 법률

第32條 [勤勞의 權利·義務 등, 國家有功者의 機會優先] ① 모든 國民은 勤勞의 權  
 제32조 일할 권리 의무 따위, 국가 유공자 기회우선 국민 일할 권리

利를 가진다. 國家는 社會的·經濟的 방법으로 勤勞者의 雇傭의 增進과 適正賃金의  
 국가 사회와 경제의 일꾼들 고용 증진 알맞은 품삯을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最低賃金制를 施行하여야 한다.  
 보장하도록 법률 대로 최저 품삯제도 시행

② 모든 國民은 勤勞의 義務를 진다. 國家는 勤勞의 義務의 내용과 조건을 民主主  
 국민 일할 의무 국가 일할 의무 민주주의

義原則에 따라 法律로 정한다.  
 원칙 법률

③ 勤勞條件의 基準은 人間의 尊嚴性을 보장하도록 法律로 정한다.  
 일하는 조건 기준 인간 존엄성 법률

④ 女子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雇傭·賃金 및 勤勞條件에 있어서 부당한  
 여자가 일할때 고용 품삯과 일하는 조건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年少者의 勤勞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어린 사람 일할은

⑥ 國家有功者·傷痕軍警 및 戰歿軍警의 遺家族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優先  
국가 유공자 상이 군경과 전몰 군경 유가족 법률 대로 남편자  
的으로 勤勞의 機會를 부여받는다.  
일할 기회 가지게 한다.

第33條〔勤勞者의 團結權 등〕① 勤勞者는 勤勞條件의 향상을 위하여 自主의인 團  
제33조 일하는 사람들 단결권 그밖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조건을 높이기 스스로 하는  
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權을 가진다.  
단결권·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② 公務員인 勤勞者는 法律이 정하는 者에 한하여 團結權·團體交涉權 및 團體行動  
공무원 일꾼들은 법률 사람만 단결권·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權을 가진다.

③ 法律이 정하는 主要防衛産業體에 종사하는 勤勞者의 團體行動權은 法律이 정하  
법률 주요 방위산업체 일꾼들 단체 행동권 법률  
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를 따라서

第34條〔社會保障 등〕①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제34조 사회보장 그밖 국민 사람 생활 권리

② 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노력할 義務를 진다.  
국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 의무

③ 國家는 老人과 靑少年의 福祉向上을 위한 政策을 실시할 義務를 진다.  
국가 노인 청소년 복지향상 정책 의무

④ 身體障礙者 및 疾病·老齡 기타의 사유로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  
신체장애자와 질병 노령 그밖 까닭으로 생활능력 국민 법률  
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데에 따라서 국가

⑤ 國家는 災害를 豫防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國民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국가 재해 미리막고 위험에서 국민  
한다.

第35條〔環境權 등〕①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  
제35조 환경권 그밖 국민 알맞고 기분좋은 환경 생활 권리

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국민 환경보전

② 環境權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法律로 정한다.  
환경권 환경권을 쓰는 일 법률

③ 國家는 住宅開發政策 등을 통하여 모든 國民이 快適한 住居生活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주택개발 정책들 국민 알맞고 기분좋은 주거생활

노력하여야 한다.

第36條〔婚姻과 家族生活, 母性保護, 國民保健〕① 婚姻과 家族生活은 개인의 尊嚴  
제36조 혼인 가족생활 어머니 보호 국민보건 혼인 가족생활 존엄  
과 兩性의 平等을 기초로 成立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國家는 이를 보장한다.  
남녀 평등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국가

② 國家는 母性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어머니들을 보호하기

③ 모든 國民은 保健에 관하여 國家의 보호를 받는다.  
국민 보건 국가

第37條〔國民의 自由와 權利의 尊重·制限〕① 國民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에 열거  
제37조 국민 자유 권리 존중 제한 국민 자유 권리 헌법 늘어  
되지 아니한 이유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놓지 까닭으로 가볍게 볼 수 없다.

② 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  
국민 자유 권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사회일반 행복과 이익을  
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경우에만 법률 자유 권리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바탕이 되는 해질

第38條〔納稅의 義務〕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  
제38조 세금을 바치는 의무 국민 법률 데에 따라서 세금을 바칠 의무  
다.

第39條〔國防의 義務〕①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제39조 국방 의무 국민 법률 데에 따라서 국방 의무  
진다.

② 누구든지 兵役義務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處遇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의무를 행하기 때문에 이롭지 못한 대우

## 법률체계의 민주화에 대한 심층적 분석

박원순 지음, 『국가보안법연구』 1·2·3, 역사비평사

### 한 상 범

####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홀히 하는 문제

일본 제국주의 파시즘 탄압체제의 본질을 아는 것이 바로 일제하 치안유지법의 이해로부터 비롯되듯이, 한국의 정치실태를 아는 것도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을 알지 못하고는 한국의 정치사나 헌정사조차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을 새삼스럽지만 따져보면, 그것은 건국 당초 집권한 이승만을 정점으로 하는 보수세력이 정권의 구축과 공고화 내지 장기집권을 위해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탄압을 가하고 국민에게 겁을 주며 통제

장치를 조여가는 데, 국가보안법이 가장 주된 무기이고 수단이며 방편으로 악용되어왔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그러한 국가보안법의 역기능은 끝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나라로서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사상에 대한 이단 심문적 규제와 인권유린의 악법으로서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그것이 갖고 있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률이라는 명분 때문에 지금껏 그 문제점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받아본 적이 별로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 머리 속에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은 국가안보를 포기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으로 인상을 받게끔 길들여져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나라라는 우리의 가장 '자유민주주의' 적이지 못한 스스로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해방 이래 멧덩구리처럼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미워하고 불신하는 악순환 속에서, 그것을 아주 잘난 처신으로 착각하는 비극을 겪어왔다. 남과 북 양쪽이 체제보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수한 반민주적 반민족적 대응으로, 기득권층과 지배층의 지위를 유지시켜 오는 데 그럴듯한 명분으로 국가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왔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의 제정배경과 개정경위 그리고 그 적용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도 그것은 한국정치의 주요 단면을 보는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보아도 우리 법률체계의 민주화문제 자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연구는 강단법학으로부터 경원시되어왔고, 법조계 대부분 인사들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주저하여 감히 손을 대길 꺼렸다. 정치권이나 이른바 '재야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면 운동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문제제기라고 보아 넘기는 것으로 그쳤다. 참으로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풍조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벽을 허물려고 감히 나선 외로운 일꾼이 박원순 변호사이다. 1989년에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보안법연구 1—국가보안법변천사』를 내었을 때 참으로 장한 일에 뛰어들었구나 생각했는데, 마침내 이번 『국가보안법연구 2—국가보안법적용사』와 『국가보안법연구 3—국가보안법폐지론』을 완성한 것은 우리 법학계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경하해마지 않을 일이라고 하겠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론의 장벽

국가보안법에 대한 반대는 시정의 상식으로는 '국가안보' 까지도 소홀히하는 정치적 극단론으로 대개 규정지어진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지닌 잘못된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여 그것을 폐지하는 길밖에 다른 더 좋은 묘책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폐지론'을 제시하기보다는 '개정론'으로 입론을 세워서 안전한 길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보안법을 무기로 쓰는 세력이 노리는 함정이기도 하다. 무엇인가 하면 보안법의 잘못된 내용과 그 운용(적용)을 가려버리고, 보안법 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다루도록 강요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 이 울타리 속에 갇히면 '안보'라는 이유로 약간의 자유제한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르는 위법·불법·탈법·무법 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결국 '정권' 안보론 속에 묻혀버리고 만다. 무엇보다 냉전시대의 탄압논리와 우익 백색테러에 질려버려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편견을 악용하는 것이다. "말이 많으면 빨갱이"라고 하는 논리는, 일제하 파시즘의 테러리즘의 "물을 것 없다(問答無用)"고 하며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 우익 테러분자의 논리와도 유사하다. 아니 아주 같다고 할 수 있다. 테러리즘의 논리는 이미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리를 따지는 이유의 제시 같은 것은 상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학자나 인텔리들은 보안법 반대를 꺼리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길 주저하며 뒷전에서 어슬렁거리는 일이 많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를 과감하게 돌파하고 문제를 백일하에 제시한 것이 박원순 변호사의 저서인 『국가보안법연구 1』이다.

이 첫번째 책은 부제가 나타내듯이 '국가보안법 변천사'를 다루고 있다. 1948년 건국 직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배경과 이유로부터 그 이후에 정치적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개정 또는 변조·개악되어온 경위를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제1부에서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가고 민족통일의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상황 변천을 조망하면서 문제에 접근한다. 사실 국가보안법 체제에 의한 통제와 탄압의 수법으로 오늘의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득권층과 지배층이 자기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과 대응책을 아직도 고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민족적 비극을 가일층 격화시키는 일밖에 안된다. 제2부 제1장 법과 이데올로기, 제2장 반공이데올로기와 국가보

안법 및 제3장 국가보안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로 서술이 전개되는데, 여기서 제3장의 4. 국가보안법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서 지적된 것은 다시 새겨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박원순 변호사는 법률 제정 당시의 사회정치적 제 역(세력)관계를 고려해 논구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지만 우리 법학자나 사회과학자들의 법률인식에서 개념논리의 형식적 명분성만 보고 그 실태를 놓쳐버리는 맹점을 경계한 것이다. 다음에 그는 보안법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치안유지법 등과 같은 일제법제의 잔영이 남아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이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일제 패망 이후 일제잔재 청산을 못하고 일제하 친일부역배들에 대한 민족적 심판을 못한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민족적 불행을 가져오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가하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일제하에서 치안유지법을 운영하던 일제 앞잡이들인 법률기술자나 고문 기술자들이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반공일선의 용사로 둔갑을 한 채, 정권안보를 위해 정치적 반대파를 때려잡는 일에 역할을 다함으로써 애국자로 변신할 수 있었던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거꾸로 뒤틀린 역사의 잘못됨이 사회기풍을 엉망으로 만들고 정권의 정통성 자체에 치명타를 가하게 된 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의 이승만이나 역대정권에 대한 부정의 논리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보안법과 일제잔재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박원순 변호사는 이어서 "법률이란 지배권력의 통치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는 점을 솔직하게 시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지배계급의 도구성 문제는 자칫하면 맑스주의적 법률인식으로 몰리기까지 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알면서도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아니한다. 바로 그것도 국가보안법 체제하에서 길들여진 '빨갱이' 노이로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미국 헌법제정의 아버지라고 하는 알렉산더 해밀턴이 연방헌법의 비준동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쓴 논설에서도 정부권력은 재산소유자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주된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맑스의 '마'자도 입에 올릴 수 없었던 해밀턴까지도 '빨갱이'로 몰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 헌법학도는 해밀턴을 배우고 법률의 계급성이란 면에 대해서도 상식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정은 아직도 그러한 사회인식을 위협시키고 있고, 이처럼 지극히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반공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면이 학자를 바보로 만들고 일반 사람들을 멍청한 겁쟁이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러한 현상도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조성한 반공주의적 ‘빨갱이’ 사냥의 강권통치가 만들어놓은 산물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겠지만 말이다.

제3부는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과정을 다루고 있다. 한국의 정치나 헌법정치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의 큰 사건 자체이거나 사건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사전개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법질차 면에서도 변칙, 날치기로 통과되거나 군사쿠데타로 헌법기관을 무법적으로 해체한 채, 군사정권 기관인 국가재건최고회의(1961년 군사쿠데타 이후)나 국가보위입법회의(1980년 5·17쿠데타 이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다. 물론 1987년 6·10시민항쟁 이후로 개혁입법이나 여소야대 국회에서 민주화 입법의 일환으로 일부 개정의 시도나 개정이 있기는 하였다고 하지만,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한 일부 양보성 무마입법의 시도나 대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반공주의 정책의 몽둥이가 마구 휘둘러지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당한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건국 이전 미군정하에서 좌익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건국 후 서북청년단이나 대동청년단에 의한 테러리즘의 공포와 반이승만파에 대한 빨갱이 몰이, 6·25전쟁 당시의 보도연맹이란 전공산주의 운동자에 대한 무법적 무차별 학살과 전쟁중의 빨갱이 처단선봉, 일상적으로 반정부 인사나 당파를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는 정치기류와 그 대표적 사건으로 1950년대의 진보당사건과 조봉암 당수의 처형 그리고 군사쿠데타 후의 반공국시론으로 탄압을 대대적으로 가했던 엄청난 군사독재와 그 후 군사정권의 용공조작과 탄압이란 악순환, 이러한 정치적 탄압과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아직도 이 사회에서 ‘빨갱이’로 몰리면 그것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빨갱이나 그 비슷한 것만 해도 기피하고 도피하며 멀리하려고 하는 것이 대개 서민의 피해의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한 공포와 불안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기득권층과 지배세력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돌파구를 찾는 데 성공해왔다. 선거 때 반대파를 물먹이는 가장 손쉽고 빠른 수법은 ‘용공적’이라고 하는 암시만을 주면 되고 거기에 위기의식을 부채질하면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 사람이나 제도는 걸어온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박변호사의 『국가보안법연구 2』는 ‘국가보안법 적용사’라고 부제가 붙어

있듯이 국가보안법이 걸어온 행적을 보여주는 운영과정의 기록부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력서이다. 사람이 말로써는 그럴듯하게 자기 명분을 꾸미고 거짓말도 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아주 잘 속아오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제도나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그 행적, 실적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떠한 제도도 그 설립의 취지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다. 독재자도 자기가 국민을 쥐어짜고 억압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사회개조’나 ‘사회정화’나 ‘도의회복’이니 ‘복지건설’이니 하며 떠들어댄다. 우리도 1980년에 ‘정의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말을 파출소 문턱 높은 자리에 써놓은 것을 싫도록 보아왔다. 그런데 그 정의사회 구현은 ‘삼청’교육대이고 사회보호법에 의한 감호소행이고 직장에서 추방이며 민권의 탄압이었다. 말이야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바보가 법률을 만들면서 이 법률이 악법이고 바로 당신들 손발과 입과 귀를 조이고 틀어막는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해왔다. 당국자는 보안법을 만들 때나 지금이나 탄압의 악법이라고 하진 않는다. 문제가 되어도 법의 취지는 그렇지 않은데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슬쩍 빠져나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주장이 과격하다거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을 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 책을 보라고 권한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있는가하는 점을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 책을 보라고 권한다. 국가보안법이란 울가미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거나 신세를 망칠 뻔하거나 망친 사람에게는 더더구나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불가와 필요론을 주장하는 당국자들에게 바로 이 책을 보라고 권한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써 국가보안법까지도 법의 이름으로 옹호하고 싶은 심정을 순진하게 품고 있는 사람들도 판교 중에는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책을 보고 악법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어땠고 그것이 주는 엄청난 비극이 어떠한 것인가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도 이 책을 보기를 권한다.

『국가보안법연구 2』를 보면, 박원순 변호사가 그의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런 사람도 반공법에 걸렸는가” “이런 일도 국가보안법으로 문제되었던가”하고 놀랄 것이다.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일로 시골에서 어느 장날에 젊은 농부가 채소판 돈으로 막걸리 한 잔을 사마시고 농산물 값이 뚱값이 되어 버린 세대에 대한 화풀이로 “빌어먹을 놈의 자식들”하고 몇마디 술김에 지껄

이다가 경찰관하고 시비가 붙었다. 지서에 끌려가서 귀싸대기를 몇 대 얻어맞자 이번에는 화김에 “여긴 법도 없어, 법치주의 국가가 이 모양이야. 이북에서도 이렇게 무법천지는 아니겠다”하고 떠들다가 북한을 지지·동조·찬양했다고 하는 죄로 신세를 망친 얘기가 있다. 이보다 좀 고급스러운 일로는 어느 소설가가 소설에서 미군 병사가 한국의 부녀자를 강간하는 것을 썼다가 ‘반미’ 감정을 선동하고 ‘반정부적’ ‘반국가적’ 성향을 부추기는 것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적에 대한 동조·찬양에 이르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소설가는 단단히 봉변을 당한 일이 있다. 그의 소설 중에 박정희와 그 측근을 야유·비평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으로 미움을 사서 꼬투리를 잡힌 것이거나 또는 소설가인 주제에 정권이 어떻게 민주가 어떻게 하다가 결국 높은 양반들의 미움을 산 것이 원인이 아닌가 보인다. 좌우간 뭉게 보이면 손을 보는 법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보안법의 기능이기도 하다. 이것 말고도 공산당선언이라고 하는 1848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여 년 전에 맑스와 엥겔스가 쓴 pamphlet을 본 것이나, 그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적표현물 소지죄가 되어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마침내는 ‘요시찰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취직길도 막혀버린 젊은이가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따지자면 정치적 거물로부터 이름없는 일반 시정인에게 이르기까지 골고루 퍼져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둘째권 책에서 제1부는 시대별 적용사를 다루고 제2부에서는 주제별 적용사를 다루고 끝으로 제3부에서는 적용절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국가보안법 사건별 자료를 이만큼이나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공로가 아닐 수 없다. 내 개인적 입장에서도 연구를 할 때나 글을 쓸 때 어느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무슨 책이라든가 어느 사건의 경위와 그 재판내역이라든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잘 기록된 것이 전혀 없었는지 피하여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하나의 자료집으로서도 도움이 되게 만들어졌다. 물론 박변호사의 책은 자료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 나름의 문제점을 분석·비판하고 정리한 것이다. 이 자체만 해도 강단법학이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던 것을 해낸 것이라고 하겠다. 이 작업을 해낸 박변호사나 여기에 동참·협조한 분들의 노고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그 자체가 하나의 당당한 실적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기초작업이다. 여기서 박변호사가 이룩해낸 이정표에서 출발하여 개별사건별로 특수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한 가지 예로서 1950년대 최대의 정치적 사건인 조봉암씨 사건도 4·19혁명

이후 일부 거론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본격적인 연구가 법률학적 또는 법사회학적 및 정치사적인 면에서 착수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집권층은 조봉암씨에 대한 소추에서 평화통일의 국시위반 혐의로 인한 탄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간첩이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서 사형으로까지 몰고가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의혹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법학적으로도 정리되어 평가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서 이 사건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하는 점이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권대복씨의 『조봉암과 진보당』이라고 하는 훌륭한 저술도 나와 있지만 보안법연구의 일환으로 논구되어야 할 여지가 아직도 많다.

여기서 보안법 연구에 대해서 일제 잔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앞으로의 과제를 지적해본다. 박원순 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거나 미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면으로 보아도 좋다. 1970년대의 사회안전법은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일제잔재로 잔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일제의 치안유지법 체제에서 우리에게 옮겨왔다고 할 일제잔재는 ① 보안법 위반자는 반역자, 극악한 이질분자로 단정하여 인권이 무시될 수도 있다고 보아서 비인도적 절차하에 방치되는 일이다. 여기에는 고문 등 가혹행위와 그밖에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온갖 행위가 공안기관에 의해서 아무런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고 태연히 자행된다고 하는 점이다. ② 다음에 예방구금이나 보호관찰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시민생활의 기본적 권리가 함부로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다. 예방구금은 사회안전법에서처럼 조치하는 것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보안관찰법은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요시찰인(블랙리스트 기재 인물)’에 대한 경찰과 기타 공안기관의 관리가 어떠한 것인지 일반사람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아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다. 몇 해 전 윤석양에 의해서 보안사(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실태가 드러났다. 여기서 드러난 자료만 보아도 수사기관에 의한 개인에 대한 감시와 사생활에 대한 규제 내지 침해 가능성이 얼마나 심각한가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도 보안법 체제의 일환으로서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③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보안법 체제로서 일제잔재는 전향제도이다. 이 제도가 나온 일본에서 이해하기는 전향이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권력의 강제로 말미암아 그 주의나 사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전향은 사상·양심·세계관의 자유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서, 세계의 자본주의 나라 중에서 이 전향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는 지금은 거의 없다. 우리는 '수인처우규칙'에 따라 전향거부자에 대해 불이익을 과하여 규제하고 있고, 실제로 교도소나 공안기관에서 피의자나 피고인 또는 수형자에게 전향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이유로 강압이나 유혹을 가하는 것 등 관권이 자행하는 제반 강압수법은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도 안된다. 일제잔재로서 전향제도의 청산은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둘째권 책의 제3부 적용절차에서는 이른바 범집행과정의 적법성 여부 문제가 정밀하게 또 대담하게 분석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일제잔재로 남아있는 악습은 먼저 지적했듯이 반국가사범은 흉악범이라고 하는 공식이 유지되고 있고, 그러한 악질적 이질분자인 '빨갱이'들은 법의 보호 밖에 있다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은 가장 인권이 난폭하게 유린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조성하는 촉매제이다. 이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치밀하게 분석한 것은 아주 돋보인다. 인권의 보장은 무엇보다 절차적 보장으로부터이고, 이것이 무시될 때 그 어느 누구라도 인권부재의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은 법률을 아는 사람에게는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의 집행에서는 이러한 상식이 태연하게 무시되고, 그러한 인권유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나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국가보안법 체제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왔는가하는 점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주는 것 같아서 섬찟하다.

####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한다는 역설인가

박원순 변호사의 세번째 책인 『국가보안법연구 3』은 바로 폐지론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이 책 머리말에서 말하길 “이 3권을 통하여 필자는 국가보안법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반 법률적 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유례없는 사상의 탄압법인 동시에 세계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의 진전과정에 비추어 시대착오적인 냉전과 독재의 유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려 하였다”고 쓰고 있다.

나는 스탈린주의로 불리는 억압체제의 분해과정에 대해 여러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으나, 시민적 또는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의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정착할 수 없었다고 하는 한계 때문에 구시대적 잔재인 전제주의와 관료주의를 청산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 특히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의 유산으로서 자유와 인권보장제도, 정치과정의 개방과 반대당파와의 공존의 제도 및 권력

자에 대한 선거와 임기를 통한 책임성과 교체성의 제도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킨 전통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따져볼 수 있다고 본다. 스탈린주의하에서는 법률적인 면에서 시민법 제도의 초보적 기본원리인 죄형법정주의를 무시한 채 유추해석을 통하여 반대당파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합법화했고, 고문과 절차적 적법성을 무시하고 인도주의에 입각한 형사절차의 준수를 이행하는 것에 무관심했다고 하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보안법 체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유사한 사례로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박원순 변호사가 말하고 있듯이 시민법 제도가 이미 확립해서 보편적 원리로 상식화해놓은 법의 일반성원리에 입각한 예측가능성, 계산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바로 가장 초보적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3권에서는 제1부에서 국가보안법의 법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간에 적용(운영)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모순과 부조리를 이론적,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제1부 제1장에서 국가보안법의 일반적 분석에서는 위헌성과 중복성 및 상충성이 정연하게 제시되고 있고 제2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조문별 분석이 시도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체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특히 일제잔재와 관련해서 건국 이래 국가보안법 체제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가져왔는가하는 점을, 박원순 변호사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나는 나름대로 이 책을 보는 독자에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제기로서 다음의 점을 주의해보면서 이 책의 문제제기에 초점을 돌려보라고 말하고 싶다.

① 먼저 아무리 그럴듯한 제정취지나 존립목적을 고집한다고 해도 이제까지의 국가보안법 체제는 보안법이 정치적으로 끊임없이 악용되어왔고, 정치권력이 기득권층이나 지배층의 이익을 위하여 만능의 도깨비 방망이로 휘둘러서 인권탄압의 도구가 되어왔다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이 보안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없어도 된다고 하는 점이다. 나는 어느 방송토론장에서 말하길 “국가보안법이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거나 위태로울 정도인가. 국가안보 체제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보안법보다 국민의 지지가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런데 여당의 모의

원이 논박하길 “국가보안법이 탄압의 법이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발언도 당당히 하니 그렇지 않다는 반증도 된다. 북한측의 인권무시의 법제도에 비교하면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나는 “북한당국이 인권을 탄압하니 우리도 탄압하고 더욱이 우리는 그 탄압 정도가 가벼우니 괜찮다고 하는 식의 논리는 아주 잘못된 논리이다.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니 나도 도둑질을 하고 그것도 조금만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하는 식의 도둑질 정당화의 논리방식이 보안법 체제의 정당화 논리로서 내세워질 것은 아니다”고 했다. 물론 이렇게 꼬집은 말 일부는 삭제 편집되어 방송이 되었지만 법운영의 이제까지의 행적으로 보아도 근본적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하나씩 따져가면 법의 적용(운영)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률 자체의 내용상의 문제까지 나온다. 이 점을 박변호사는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다음에 보안법의 문제점은 일제잔재의 문제이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탕에 깔린 치안유지법적 이데올로기에 있다. 무엇인가 하면 일제 치안유지법 체제는 천황이라고 하는 절대권위와 가치를 전제로 하여 그에 반역하는 일체의 행위나 나아가서 생각까지를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법과 죄악으로 규정했던 것인데, 보안법은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사상에 대한 전향제도가 나오고 반정부를 곧장 ‘반국가’로 단정하여 박해하는 논리가 전개되는 것이다. 국가권력이나 권력자는 도의적 권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다. 권력 자체는 시민적 국가관에서는 ‘필요악’으로 규정하고 권력자는 항상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로서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시민대중의 감시·비판하에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보안법의 배경에 깔린 생각이나 그 운영자는 ‘나라님’의 의식을 지니고 있고 나라님에 거역하는 생각조차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신민(臣民) 통치문화의 발상에서는 권력만능주의의 타성이 나오고 피치자 대중을 우민으로 객체화시켜서 잘못된 사상(생각)을 선도(?)한다고 하는 발상까지도 나오고, 바로 여기서 전향제도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③ 사상의 자유 문제로서 전향제도와 관련되는 것이 보안법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제3부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에서는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시민적 자유주의의 시대를 한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다. 유교문화적 통치로 일관되었던 이씨왕조가 일제

에게 패망한 후 식민지에서는 반일을 비롯해 모든 사상에 대해 탄압이 자행되었고, 특히 1925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따른 체제가 확립되고서는 천황제를 부인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반대하는 사회주의나 무정부주의사상은 철저히 탄압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해방 후 일시적으로 방임적 시대가 있었으나 미군정하에서 규제와 탄압이 자행되고 건국 후에는 국가보안법 체제로 재정비된 것이었다. 그래서 일제시대 이래로 ‘사상범’이라고 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은 사회에서 ‘페스트’ 환자처럼 위험시되어 격리되고 구속되어 관리당했고 맑스나 레닌과 관련된 책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사는 사회를 살아왔다. 해방 후 냉전시대에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된 사회과학자들 중에는 맑스나 레닌의 저서를 전혀 또는 거의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학자라고 행세하고 있다. 이들은 편파된 온실적 지식체제로 왜곡된 절름발이 학자가 되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고, 학생에게 아주 피상적인 강의를 하여 부실한 연구의 표본이 되고 있다. 비단 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일반의 문제로서 사상과 학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것을 모르거나 잘못 알게 만들어놓은 것이 국가보안법 체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비롯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는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지식 탐구와 자유로운 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저해하고 있고 나아가서 사회분위기 자체를 잘못 끌고 있다.

3권 제2부에서 논하고 있듯이 남북관계와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문제점도 좀더 솔직하게 짚고넘어가야 한다. 이 점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한반도 주변정세변화와 남북관계의 현황에서 국가보안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하는 점을 치밀하게 따지고 법적 모순구조까지도 드러내어 지적하고 있다. 그 하나가 법률상 북한정부는 ‘범법집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도 안되고 공존도 따질 여지가 없는데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공존과 평화협력을 정부의 정책으로 말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북한정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행위나 거래가 자유라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하면 불법이고 범죄가 되는 것이다. 북한정부가 유엔에 동시가입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적행위가 되어서 국가보안법에 걸려들게 된다. 이러한 허구와 가정 중에 지나쳐버려서는 안될 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의 정치질서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못하다. 아마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이나 이념이 '자유민주주의' 일 수는 있다고 해도 현실의 보안법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될 수 있는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점을 냉정하게 잘 살피보아야 한다. 바로 이 점에 맹점과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④ 네번째로 보안법 체제는 인도주의와 경륜을 어기는 그릇된 악습과 제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전제통치나 독재하에서는 밀고를 권장한다. 상호감시와 밀고라고 하는 제도는 전제정치에서는 연좌제도와 오가작통 같은 지역적 연대책임제도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잔재가 일제 파시즘기에 나온 '도나리구미(隣組)'에 대한 전국적 전국민적 상호감시적 통제조직화에 의한 관료통제와 각종 관변단체를 통한 국민 모두에 대한 제복적 규율하의 복종강요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일제의 전시체제하에서는 국민총동원체제와 국민정신총동원체제가 있었다. 우리 보안법 체제의 밀고제도가 그러한 점에서 문제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고발정신이 권장되고 공개적인 규탄과 문제제시를 통한 시민협동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밀고'하여 돈을 타먹는다는 것을 미끼로 치안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상적으로 제도가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불고지죄라고 하는 것을 보면 봉건 전제주의의 연좌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인륜에 반하는 탄압체제의 일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⑤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인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제도하에서 참으로 보장된다고 할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애착이라고 하는 국민적 지지와 각성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엄청난 단속과 규제를 해도 그것으로써 체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정치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을 보면 피치자 대중의 반란이나 준법무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지배층의 부패·타락으로부터 일어나는 체제의 분해과정에서 비롯되어온 것을 본다. 파시즘체제처럼 아주 경직되고 강력한 정부라는 인상을 주는 체제가 붕괴되는 것은 그 자체가 지닌 한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국민대중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모순에서 체제의 자체유지의 지력을 잃게 되고 만다는 점에 있다.

우리가 통일과 국가보안법 문제를 두고 생각할 때 시급한 문제는, 지금까지 이처럼 보안법을 통하여 자유와 민주에 대한 추구를 탄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어떻게 이루어나가도록 보장·지원하는가하는 점에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국민 스스로가 어떠한 정치사회 체제를 선택하고 그것

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 만한 애착을 둘 것인가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보안법 체제는 반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이다. 냉전시대의 국가보안법 체제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냈고 특히 빨갱이와 용공분자를 만들어냈다. 보안법을 정권을 위해 악용하며 인권을 탄압한 세력이나 개인이야말로 가장 이 나라의 민주와 자유에 대해서 해를 끼친 사람들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주의해볼 필요가 있다.

나는 박원순 변호사가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에 이론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감히 말한다. 누군가 해야 할 일, 특히 법학자가 해야 할 일을 실무에 바쁜 재야 변호사가 훌륭히 이룩해냈다. 우리가 민주화의 문제를 말할 때는 보안법의 운영문제를 지나칠 수 없고 한국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벗어야 할 멍에가 국가보안법 체제이다. 이 체제의 정체가 무엇인가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 멍에를 벗기는 일에 길잡이로서 햇불을 밝힌 박원순 변호사의 노고에는 보답이 있을 것이다. 끝으로 한마디 다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책은 법률책으로만 보려고 하기보다 한국사회의 정치·사회·경제·문화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는 점을 법을 통해 조명해보는 연구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만 문제를 따지기보다 시민대중이 우리의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아야 할 책이라고 하겠다. [동국대 법대 교수]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록  
김보은 사건 감정서/김광일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 통계/민변편집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록\*

문서번호 CCPR/C/SR.1150  
인권이사회  
제45차 회기  
1150회 회의(1992년 7월 13일 오후) 요약보고서

회의는 오후 3시 15분에 개최되었다.

인권규약 제40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1. 의장의 초청으로, 박수길, 문봉주, 정대호, 유국현(한국측 대표)이 이사회 의석에 출석하였다.

2. 박수길(대한민국) : 한국의 최초 보고서를 소개하고, 한국 내에서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전세계에서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1990년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는 이 보고서 검토가 한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의무를 보다 훌륭히 이

\* 1992년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 회의 중 한국에 관하여 이루어진 내용을 요약한 인권이사회의 요약보고서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한다. 이 보고서들은 인권이사회의 1150회(7월 13일 오후), 1151회(7월 14일 오전), 1154회(7월 15일 오후)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천정배 변호사의 보고서에도 인용되어 있으나 인권이사회가 작성한 회의보고서라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인권이사회 회의 진행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나라 법제도와 인권상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행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도록 건설적인 대화로 이끌어지기를 희망했다. 이 사건은 이미 대중매체와 많은 인권단체의 관심을 끌었으며, 정부에게는 한국민의 인권신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복돋아주었다.

3. 한국은 보고서의 구성과 내용에서 인권이사회를 지칭을 준수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한국 내 인권보호를 가능한 한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포함시켰다. 한국은 신문법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법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했지만, 관련 행정조치와 함께 헌법재판소 기타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로 언급했다. 인권보호에 관한 주요한 발전은 1988년 초 행정권의 취임 이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고서는 그 이후부터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4.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도적 조치들로서 순수한 민주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호를 증진시켰다. 한국민은 1987년 6월 29일 민주화를 위한 선언에 기초한 현행 헌법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선거를 이전의 간접선거에서 직접국민선거로 바꾸었는데, 이에 따라 국민의 참여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예를 들어, 국정감사권을 부활시킴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사법부는 법관의 임명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따라 법률의 위헌성여부를 심사하는

외에 국가권력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구하는 개인의 청구도 심사한다. 인권상황의 개선을 반영하여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 중 30여 건 이상이 1988년 9월의 제도도입 이후 구제되었다. 인권 및 기본적 자유권을 다룬 헌법조항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체포 구금의 경우에 따라야 하는 엄격한 절차는 헌법에 성문화되었고, 형사피의자나 피고인들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5. 이러한 헌법조항이 발효되기 위하여는 관련 법령이 수정되어야 하고, 관련 사법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행정분야를 개선했으며, 법률구조공단을 설립하였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권규약 제6조에 규정된 생명권을 의미하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에 따라 한국정부는 15가지 유형의 범죄에 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형사특별법을 개정했다. 한국정부는 또한 금년 말까지 입법예정인 법률개정안에 처벌의 적용을 축소하는 방안으로의 재검토를 약속했다. 문제되는 국가보안법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오히려 남용을 없애기 위해 제한하였다.

6. 한국정부 출범 이후 줄곧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1960년대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시행되지 못했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7. 한국민은 현재 과거의 권위주의 성향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아래 살고 있다. 출판의 자유 등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은 보장, 보호되고

있다. 인권규약에 가입한 것은 그러한 민주화과정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만이 국민에 의한 감시를 허용한다. 한국정부가 인권규약 제41조에 따라 이사회를 승인하는 선언을 하고 선택의정서에도 가입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에 따라 한국민의 인권은 이제부터는 헌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광범위한 보장을 강화하도록 하는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국제규약을 널리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인권규약 원문은 이사회 의사록과 주요 결정사항의 모음집과 함께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인권규약과 헌법에 신설된 조항과 절차 등을 법집행공무원에게 교육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민은 세계인권선언을 1주일 동안 기념주간으로 하는 특별한 공지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인권헌장의 정신과 민주주의 안에서 그들이 누리게 된 권리를 상기시키기 위해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기념하고 있다. 인권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었으며, 헌법은 적법하게 체결되고 공포된 모든 조약에 대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고 규정했다. 두 개의 인권규약은 한국 인권법규의 중추를 이루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민법규정의 위헌성에 대하여 1991년 4월 1일 기념비적 결정을 하면서 인권규약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국은 국내법규와 충돌되는 세 가지 조항, 즉 제14조 제5항, 제7항 및 제22조에 대하여 규약가입을 유보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본질상 부분적일 뿐이고

인권규약이 규정한 특별한 권리들을 거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의 보고서에 설명한 것처럼 관련 국내법규들에 규정된 제한을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한국정부는 그러한 유보가 인권규약에 구현된 기본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지만, 유보범위를 더 제한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검토중이다.

8. 1991년 9월 한국이 유엔의 회원국으로 승인받은 것은 유엔헌장에 따라 세계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한국정부가 노력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후 1991년 12월 국제노동기구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됨으로써 한국은 기본적인 노동조합권의 보장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강력히 지지했다. 또한 한국은 1991년 12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으며, 국회동의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망명자들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그 의정서에 회원국이 될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 활동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법원에 기소되는 인권 관련사건의 증가는 법 적용이 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입증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시민인권단체는 감시활동을 확대해가고 있다.

9. 인권규약의 이행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야기되는 긴장상황이다. 1945년 일제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이후, 한국은 상반되는 두 개의 이데올로기에 휩싸였으며, 1950년 북한의 남침은 한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고,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켰다. 한국전쟁 이후 두 개의 한국은 38선을 경계로 하여

사상적으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대처하였다. 그 결과 냉전이 종식된 1991년이 되어서야 양측은 진지한 남북대화를 성사시켰으며 평화적인 통일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남북간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1992년 2월 체결되었으며, 모든 분야에서 양국간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하여 정기회담을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는 조심스럽게 내딛는 첫 발걸음에 불과하며, 침략에 의해 거의 전복될 위기에 처했던 나라가 향후 침략에 대비한 군사력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총 150만의 무장병력이 38선을 따라 군사적 평형을 이루고 있으며,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휴전협정은 여전히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그의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방어할 의무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여전히 북한헌법에 우선하는 조선노동당 강령의 전문에 그 기본정강으로서 “남한의 인민해방을 위한 민중혁명 실현”, 다른 말로 하면 남한의 공산화를 선언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과 체제보전을 위하여 채택된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이유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어떠한 민주주의도 그의 자유체제를 전복시키려는 혁명의 폭력까지 용납할 정도로 관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확신

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1990년 결정으로 그 범위를 한정된 취지에 따라 1991년 5월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결과 헌법과 인권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제한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인권침해도 없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가안전과 존립을 위협하는”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과 같은 개념을 보다 분명하고 좁게 해석하였다.

10.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장래 계획의 하나로 한국정부는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고 있다. “법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거의 끝마쳤으며, 영장발부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다양한 국제노동기구협약에 가맹하기 위해 준비중이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동수의 대표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고 노동관련 국내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 위원회는 현재 금지되고 있는 단일작업장 내에서의 다수 노동조합을 허용하도록 노동조합법에 대한 개정도 검토중이다. 한국은 인권에 관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헌법과 인권규약의 정신과 원칙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노력하고 있다.

11. 한국정부는 전세계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1993년 6월에 개최되는 세계인권회의에 많은 기대를 걸

고 있으며, 1993년 시작되는 임기 동안 인권위원회에 한국이 이사국으로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특히 바라고 있다.

12. 박수길 대사는 위의 설명과 진술이 이사회가 한국 내 인권보호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했으며, 이사회 위원들이 제출한 모든 질의사항에 그가 아는 바를 충동원해 기꺼이 답변하겠다고 하였다.

13. 안도(Ando) 위원은 대체로 이 사회의 지침에 따르고 많은 법률 조항 외에도 몇 가지 유용한 통계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한 점에 대하여 한국대표단을 치하했다. 그는 인권규약뿐 아니라 선택 의정서에도 가입하고 그리고 제41조에 따른 선언을 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14. 한국의 장구한 역사를 통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문화적, 종교적, 철학적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다. 따라서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침략적인 정책을 취하여, 1905년 한국을 침략하고 1910년부터 식민통치를 한 것은 특히 불행한 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 해방된 이후 한반도의 분단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그는 최근의 이러한 비극적 역사를 가진 한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길 바랐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이 하였던 역할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감과 사죄의 뜻을 밝히기를 희망했다.

15. 그는 존재하는 모든 인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와 더불어 건설적인 대화의 장에 동참하기로 한국대표단이 나타낸 의지에 감사했다. 보고서 속의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그러한 취지에서이다. 첫번째는 인권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제5항의 설명에 관한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새로운 국내법이 제정될 경우 어떻게 되는가? 새로운 법률과 인권규약간에 저축될 여지가 있는가?

16. 인권규약 제2조에 대해 언급한 보고서 제29항은 성별, 종교 혹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는 한국헌법 제11조 제1항을 인용했다. 그러나 인권규약 제2조 제1항, 제26조에 열거된 바와 같이 정치적 견해를 포함해 차별이 가능한 다른 이유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그는 한국헌법과 인권규약의 차별 이유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했다.

17. 인권규약 제3조와 관련된 보고서 부분으로 이야기를 돌려, 그는 인권규약에 가입함으로써 한국이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없애기로 천명한 사실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의 조국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법적조치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사실상의 차별이 사회 내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차별과 그것을 없애기 위해 취해지고 있는 적극적인 조치 등에 대해 간략히 밝히기를 희망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간의 재산분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에 따라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보고서 제87항 (d)의 설명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두 사람이 결혼으로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들 사이에 얼마간의 재산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며,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보면 확실히 남편의 몫이 아내의 것보다 많기 쉽다. 따라서 한국 내 부부간의 재산상태와 부부간 평등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희망했다.

18. 인권규약 제4조와 관련하여, 보고서(제89항)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비상사태시에는 자유와 권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인권규약 제4조 제2항은 공공의 비상사태 경우에도 기본권에 관한 인권규약의 많은 조항들에 관하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는 한국법하에서 특정범위의 권리에 관하여는 어떠한 침해도 할 수 없다는 보고를 환영했다.

19. 국가보안법 적용의 다른 면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다른 위원들이 물론 언급할 것이다. 그는 단지 공무수행 과정에서 저질러진 고문 및 가혹행위의 금지를 다룬 보고서 부분과 관련하여 제138항에서 언급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된 사실에 관하여 좀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자 한다.

20. 인권규약 제9조에 관한 보고서 제150항은 구금에 관해서 "형사소송법의 기준과 수사기관의 실무 사이의 불일치"를 언급하였다. 실제로 누군가가 구금된 이후 그의 가족들은 얼마의 기간 내에 알게 되는가?

21.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에 관한 제10조와 관련하여, 그는

한국에서 몇 살부터 형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고서(제176항과 제206항)는 '소년'의 정확한 정의에 관하여 다소의 의문을 남겼다.

22. 거주 이전의 자유(제12조)에 관하여 선언된 자유화는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북한방문에 관한 한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상황들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3. 한국은 일본처럼 소위 보트 피플의 입국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그는 인권규약 제13조의 배경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어떤 범규정이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거나 내쫓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다.

24. 보고서 제204항 (b)(iii)과 관련하여, 인권규약 제14조 이하에 규정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가능한 제한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25. 제14조와 관련하여, 특히 항소권과 관련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사형을 선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심이다"라는 근거에 입각한 정부의 유보(보고서 제211항)를 언급했다. 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때에는 항소권이 왜 부정되는가?

26.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근 역사의 깊은 상처들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보고서 제247항에 선언된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하나의 낙관적인 징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특히 제7조 제5항은 아직도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몇몇 규정은 모호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에 대한 더 깊은 재검토가 아마 필요할 것이다. 그는 또한 법적 제재의 적용과

함께, 때때로 신념을 반복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그것은 확실히 인권규약 제18조에 저촉되며 그는 이 문제에 답변해 줄 것을 한국대표단에 요청했다.

27.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환영하면서 그는 받은 정보에 따라 특정 사립대학 혹은 학교교사들의 노동조합이 해산된 사실을 덧붙였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는 더 깊이 검토되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이다.

28. 인권규약 제24조 및 보고서 제294항과 관련하여, 근로아동의 보호문제에 대해 그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연령의 아동들이 고용되지 않도록 막는 조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29. 마지막으로 제25조 그리고 특히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제의 문제에 관하여(보고서 제308항), 그는 그 중에서도 특히 왜 언론인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그 구성원이 되는 것이 금지되는지를 질의했다.

30. 디미트리제비(Dimitrijevic) 위원은 한국대표단을 환영하면서 국제적 상황으로부터 제기되는 온갖 형태의 권위주의와 억압, 규제에서 벗어나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식적인 노력을 반영한 보고서의 시의성을 지적했다. 이사회에 제출된 서류에 대한 그의 주된 유감은—아마 그것들이 최근에 공포되었다는 점, 인권보호의 기초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보이는데—그것이 지나치게 새 헌법과 법규정들의 자구에 치우쳐, 현

실상황이나 그 권리들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관행들을 제거하기 위한 특별한 활동에 관하여 대단히 불충분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매춘에 관한 사안의 설명(보고서 제67항)은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31. 보고서 제3항에 인용된 한국헌법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보고서 제5항과 함께 법적으로 흥미있는 조항이다. 그는 그렇듯 열거되지 않은 규정들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혹은 현행 헌법시행 이후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었는지, 그리고 최고법원이 시대정신이나 자연법을 구성하는 몇 가지 권리들을 헌법에서 실제로 해석해내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32. 보고서 제6조(인권규약 제6조의 잘못된 것으로 보임—역자주) 및 생존권에 관하여 그는 보고서 제101항으로부터 사형을 포함하여 형벌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을 언급했다. 최근 사형을 규정한 범죄의 종류를 축소하는 것을 환영하면서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조잡한 해석으로 아직도 터무니없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이며 이에 대한 세부자료들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보고서 제110항과 관련하여, 낙태문제를 다루며 그는 어떤 상황에서 낙태가 범죄로서 고려되지 않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33. 제7조에 관하여 그는 고문과 기타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부인이 완전히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34. 수사과정에서의 구속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는지 보고서상으로는 아직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구속은 보통 범죄의 경우 30일을 넘지 못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더 수사하기 위한 필요가 명백한 경우에는 추가로 20일을 더 넘지 못한다. 그는 국가안보법틀에 따라 활동하는 특별수사관들의 일반적인 긴급활동에 대한 많은 국가들의 공통된 경험상 장기구금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다.

35. 한국에 관한 한 인권규약이 보호하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문제는, 비록 개정되어 조금 순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국가보안법의 현실적 지위와 관련된다. 국가보안법 개정의 주요한 관심은 특히 인권규약 제15조와 제19조에 비추어 다소 모호하게 제정되어 있는 다소 모호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모호한 용어들은 인권규약의 자구 및 정신과 다른 해석의 여지를 제공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됨은 물론 진실로 국가에 위협하지 않고 형사적이 아니거나 심지어 비난할 만한 것이 아닌 행위를 처벌하게 될 수 있다. 나아가 안도(Ando) 위원이 주목한 바와 같이 어떤 압력들은 때때로 사상을 전향시키거나 기타 사람들의 사상을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행위들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형태의 표현을 금지하는 식의 '사전적' 검열이 또한 관행화된 것으로 보인다.

36. 결국 국가보안법의 총체적인 영향에 관해 그가 표시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사회에 제출된 포괄적인 보고서가 국가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적극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을 담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는 보고서의 체계적인 표현을 칭찬했고, 이사회와 한국대표가 서로 건설적 대화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37. 아길라(Aguilar) 위원은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유용한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듯 잘 준비된 문서라고 치하했다. 그러나 앞서의 발언자와 같이 보고서가 특히 한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한 기술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에, 보고서는 많은 질의와 의문을 그에게 남겼다.

38. 앞의 발언자들과 같이 인권규약이 국내의 별도 입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그는 실제로 그 규정들이 적용되었는지 또는 법원에서 원용되었는지 물었다. 그가 언급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인권규약의 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39. 한국법과 관련된 인권규약의 일반적 지위라는 문제에 집중된 이러한 관심들은 그로 하여금 인권규약의 여러 규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법률규정뿐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더 명확하게 해줄 것을 촉구하게 하였다. 그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한국의 헌법(de facto Constitution)이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40. 헌법 제11조 제1항은 다양한

이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인권규약보다는 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보고서 제29항). 그는 이 점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희망했다. 보고서 제44항은 외국인인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모든 공직에 예외없이 적용되는가?

41. 보고서 제48항은 위헌임이 밝혀진 형벌법규는 무효로 된다고 말한다. 그 규정은 어떤 결과로 되는가? 예컨대 그 적용범위가 현재 제한되는 국가보안법에도 적용되는가? 그는 또한 검사가 행정부에 속하는지 혹은 사법부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했다.

42. 남녀평등에 관한 제3조로 돌아가 그는 보고서 제67항으로부터 매춘이 한국에서 범죄임을 언급했다. 그는 매춘 알선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다룬 제69항은 여성과 남성이 한국정부 수립 이후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향유해왔다고 말한다. 왜 한국국가 대신 한국정부라고 하는가? 제72항과 제74항은 법률전문직 및 정치영역에서의 여성지위를 다루고 있다. 그는 당해 영역들에서 성차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있는지 물었다.

43. 인권규약 제4조와 관련, 한국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시에만 비상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보고서 제92항). 이것은 확실히 모호한 개념이다. 이것은 심지어 비상수단이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해석될 여지가 있다. 헌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인권규약에서 규정한 상황

보다 더 넓게 비상대권을 질 수 있다(보고서 제90항). 인권규약 규정은 그런 경우 헌법에 우선하는가 또한 인권규약은 직접 적용되는가 아니면 법원을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헌법 제76조와 제37조 제2항(기본권의 허용가능한 제한을 다루는)은 인권규약과 양립할 수 있는가?

44. 인권규약 제6조와 관련하여, 생존권을 다루며 그는 많은 범죄들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제103항에서 사형은 형법과 "다른 관련법규들"에 따라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후자에 관한 세부자료를 희망했다. 같은 항에서 사형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에 한정된다고 했다. 그는 정확하게 어떤 범죄들이 관계되는지를 알고 싶어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50종에 달하는 범죄에 사형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강도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서 109항에서 읽고 관심을 표명했다. 나아가 1986년 이후 사형선고에 대한 상소에서 승소한 적이 없었다(보고서 제108항).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구금은 사형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제113항의 설명에 대하여도 더 많은 정보를 희망했다.

45. 보고서의 제125항은 세 가지 종류의 전염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가능한 제한을 기술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의 권리가 실제로 어떻게 제한받는지 알고 싶어했다.

46. 인권규약 제7조로 돌아가 그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배척했던 1981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보고서 제138항). 그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고문당하거나 가혹행위를 당했던 다른 사례들이 있었다.

47. 인권규약 제8조와 관련하여, 그는 사람을 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납치하는 것은 범죄라는 점을 언급했다(보고서 제141항). 그는 납치가 그 자체로 범죄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했다. 제146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가 한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음을 언급했고, 그는 이 점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희망했다.

48. 인권규약 제9조와 관련하여, 그는 한국의 정치범 수에 대하여 물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정치범은 약 1,300명에 이른다. 보안처분에 관한 헌법 제12조 제1항은 특정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처분은 무엇인가?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들이 재판없이 150일까지도 감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관심을 표했다. 그러한 때 수감자의 복지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49. 인권규약 제10조와 관련, 그는 이데올로기적인 전향 정도에 따라 죄수의 등급이 있는지, 어떤 등급에서 다른 등급으로 바뀌기도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독방구금을 규율하는 법장치는 무엇인가?

50. 인권규약 제12조를 다루는 보고서 부분(제192항 및 제193항)이 주민등록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음을 그는 언급했다(제227항). 그 법규정

들은 무엇이며 그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피의자에 대해 2년까지 보안관찰 아래 있도록 하는 보안관찰법과 연결되는가?

51. 인권규약 제14조와 관련하여, 한국헌법상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그는 언급했다(제200항). 그러나 졸속은 피고인의 적정한 방어준비에 지장을 줄 것이다. 그런 규정의 현실적 효력은 무엇인가? 제204항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소송을 준비할 별도의 시간이 허용되는가?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하는 자동적인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특정한 경우 법정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것은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을 할 수 없게 하며, 법정에서 출석한 경우까지도 같다. 이 점에 관한 더 많은 자료를 그는 희망하며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선고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52.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다루는 인권규약 제18조와 관련하여, 그는 한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관심을 표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인권규약규정과 양립 가능한지 의문시켰다.

53. 마지막으로, 그는 금지산자로 선언된 사람들의 정치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 보다 많은 자료를 원했다(제306항). 나아가 어떤 교사들과 언론인들은 정당을 세우거나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며 정당으로서 해산된 경우 그와 같은 정당정책에 입각한 새 정당이 금지된다는 사실이 연

급되었다. 어떤 정당들이 이미 금지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54. 엘 샤페이(El Shafei) 위원은 한국이 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것을 환영했다. 보고서는 상세한 것으로 한국 내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시인했으나 전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오랫동안 한국이 냉전의 영향을 깊이 받았고, 반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민주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고 자의적인 폭력의 사용, 가혹행위, 고문과 권력의 남용이 있어왔다. 국제인권규약 가입과 이사회 출석 등 한국정부의 새로운 태도는 과거의 과도함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55.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사회가 갖는 주된 관심은 한국의 입법이 어떻게 인권규약과 양립 가능하도록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변화의지를 보여주는 보고서 제출 이후의 발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한다.

56. 그는 인권보호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있는지 물었다. 나아가 대표단은 인권규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규약상으로는 보장되었으나 국내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권리가 침해된 경우 어떻게 되는가? 그는 인권규약에 직접 근거를 둔 어떤 법원판결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특히 법관의 임명, 임기 및 이동을 규정한 법규 등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자료를 알고 싶어했다.

57. 헌법재판소는 오직 하급법원의

판결 기초가 되는 법의 합헌성만을 재판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개인 등이 제기한 위헌주장을 심리할 수 있는가? 그는 정부가 곧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노동쟁의조정법과 집회, 결사, 시위 등에 관한 여러 법률을 인권규약과 양립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를 희망했다. 그는 그 조항들이 과거에는 필요했으나 확실히 개정 혹은 폐지될 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58. 마브로마티스(Mavrommatis) 위원은 냉전종식 후 확실히 한국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특히 남북한 사이의 관계, 장기수·정치범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들에 대해 많은 위법행위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는 선택의정서와 인권규약 가입으로 가시화되었다.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훌륭한 것이지만 다른 많은 것들 같이 구체적인 사실의 뒷받침 없이 일반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상황이나 인권규약 규정을 이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보고서는 헌법이 인권규약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나(제6장)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별도의 국내입법 없이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지만(제5항), 그는 그 원칙이 인권규약의 자기집행력이 없는 규정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59. 헌법 제11조 제1항은 많은 이

유를 들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제29항). 그러나 그 이유들 중에 인종, 피부색, 출생 그리고 특히 정치적 소신과 같은 근본적인 기준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그 나열된 항목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60.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논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범죄의 가벌성에 관하여, 형법 제1조 제1항은 인권규약 제15조에 반하는 것 같다. 사형의 부과에 관하여, 모든 살인죄가 사형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할 정도로 극악한 범죄로 간주되지는 않으므로 다양한 살인죄의 정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하는 방법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된다. 판사는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가? 그들의 보수는 보장되는가? 그들은 판사직에서 사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은 판사의 직무와 관련된 민사책임으로부터 면책되어 있는가 등등.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자세한 규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사법구조, 여러 법원의 관할과 권한 및 법원의 위계관계, 상소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61. 인권규약 제25조와 관련하여, 교사와 언론인이 정당받기인이나 당원이 되는 것을 금하는 정당법의 설명되지 않은 조항은 인권규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에도 반하는 것 같다. 헌법과 정당법 중 어느 것이 우선하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62. 끝으로 그 보고서는 종교적,

문화적 소수집단에 대해 꽤 한정되게 설명한 것 같다. 한국의 종교구성에 대하여 좀더 알았더라면 흥미로웠을 것이다.

63. 필러슨(Myullerson) 위원은 최근 한국에서 인권신장을 위해 벌인 노력에 대하여 감사를 표시했다. 인권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작성된 한국정부의 최초 보고서는 매우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언급되어야 할 몇 가지 차이점은 있다.

64. 보고서의 기재 가운데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되는 사례의 하나는 국민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이다. 국민의 자기결정권은 독립국가를 세울 권리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권한 그리고 그들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체제를 선택할 권한을 포함한다. 그는 그런 점에 대한 대한민국의 견해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팔레스타인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한국은 분단국가이므로 자기결정권 문제 는 매우 시사적이고, 통일을 향한 운동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의하면 북한이 통일을 위하여 제시한 조건은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한국정부 자신의 조건을 들어보는 것이 흥미로운 것이다.

65. 보고서 제29항과 관련하여, 헌법 제11조 제1항이 왜 단지 차별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만 언급하였는지 그는 의문이다. 예를 들어, 인권규약에 언급되어 있는 종교 또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 금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66. 비상조치와 계엄의 선포에 관한 보고서 제89항에 의하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 부분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았다. 제93항은 비상조치권 발동에 대한 통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았고, 또 그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통제 가 이루어지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67. 인권규약 제9조에 관한 보고서 제149항은,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를 포함하여 영장없이 구금할 수 있는 근거를 꽤 넓게 기술하고 있다. 제154항에 언급된 구금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것 같다.

68. 인권규약 제12조와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련하여,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는 데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했다. 그는 또한 판사직 임기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관습적인 10년의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보장했다고 믿었고, 종신직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제211항에 언급된 군사법원에 관련하여, 그는 어떤 부류의 사건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되는지와 비상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69.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하여 그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를 이해하였지만 최근에 전면적인 상황의 변화는 그 필요를 감퇴시킨 것 같다고 느꼈다. 확실히,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간첩에 대해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비판 세력 탄압용으로 사용되어, 맑스주의 서적을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투옥의 사유로 간주되었다.

70. 사디(Sadi) 위원은 보고서의 제출은 한국에서 과거와 새 시대의 출발을 구별짓는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히 대표단에 법무부 인권과장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에 고무되었다.

71. 보고서의 준비가 한국 내에서 상당히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을 그는 이해했다. 그러한 관심의 확산은 인권규약의 적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그는 그 관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바랐다. 이러한 관심이 전문적인 법률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인권규약을 비준한 이후 상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변했는지 그는 의문이다. 인권규약의 보호가 요청된 횟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다면 인권이사회는 한국에서 인권상황의 보편적인 전개와 연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72. 이사회회의 여러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하여 큰 관심을 표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사법심사의 대상인 것은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 법원이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명백히, 대법원은 계엄의 합법성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73. 조만간 한국정부가 인권규약 제14조와 제22조에 붙인 유보조항을 철회할 수 있기를 그는 희망했다. 한국을



지배하는 유교전통 때문에, 정부가 조약상의 의무 중 일부,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기 힘들다고들 말한다. 강한 종교적 전통을 가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고, 상황의 전개 및 여론의 진행결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그러한 나라들에게 유용할 것이다.

74. 사네(Chanet) 위원은 보고서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헌법적 보호에 관하여 풍부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과 인권규약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칭찬했다. 그러나 인권증진의 측면에서 부딪치는 일상의 어려움에 관한 정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75. 그녀는 앞선 발언자와 마찬가지로 인권규약 규정과 헌법규정간의 우열에 관하여 질문했다. 그녀는 정부가 인권규약 제23조의 유보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면서 제14조와 제22조에 대한 유보도 곧 철회되기를 희망했다. 그녀는, 보고서에 따르면 유보조항이 비록 매우 특별한 경우, 즉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군사재판의 일정절차나 공무원의 노동 3권에 대한 제한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유보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 조항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유보를 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두 가지 예외만을 포괄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76. 그녀는 판사의 선발과 연수,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하여 사법부의 구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희망하였다.

77. 보고서의 제18항은 인권규약의 내용을 특히 공무원에게 이해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가 인권규약의 일반조항과 인권규약정신을 일반공중에게 알리려고 하는 방식에 대한 많은 정보를 희망했다.

78. 헌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제48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원(소원)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사건에서 그 결정에 따라 새로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그녀는 언급했다. 그녀는 이러한 사건이 몇 건 있었는지 질문했다. 그녀는 제35항에 사용된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용어의 설명을 바랐다.

79. 인권규약 제4조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94항은, 비상조치가 발효되었을 경우에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제한은 분명히 인권규약 제4조의 절대적 기본권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에서 언급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측면만을 언급했다. 그녀는 비상조치 동안에 고문을 받지 않을 자유나 생명권 같은 기본권이 사실상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그녀는 제6조와 사형제도에 관하여 유사한 질문을 하였다. 그녀는 사형은 예외적이어야 하고 매우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사회에 견해를 상기시켰다. 무엇이 사형을 선고할 중죄인가하는 개념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형사특별법이 개정된 이후로 어떤 범죄에 대해 아직도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80. 인권규약 제9조와 관련하여,

그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어했다. 그녀는 이 기관이 피의자를 구금하고 신문할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민간단체로부터의 정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에 따른 재판도 없이 매우 긴 기간 동안 사람이 구금된 사건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러한 구금기간의 제한이 국가보안법의 적용범위를 줄이기 위하여 19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인권규약 제15조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지 궁금해했다. 인권규약 제4조 및 간첩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에 관계된 다른 의문이 제기되었다. 국가보안법에 포함된 간첩죄는 극히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판례에 의하면, 대법원은 간첩죄의 대상이 되는 국가기밀이란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

적으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한 것 같다. 이러한 정보의 누설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되는데, 이것은 인권규약 제15조, 제18조, 제19조와 관련해 차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제14조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고문상태에서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 사람이 그러한 자백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대표단이 그 보고를 시인하는지 또는 부정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제242항에 의하면 방송법의 목적 중 하나는 여론형성을 돕는 것이라 하는데, 그녀는 그 구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그녀는 세계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직까지 반공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했다.

모임은 오후 6시에 폐회하였다.

문서번호 CCPR/C/SR.1151

인권이사회

제45차 회기

1151차 회의(1992년 7월 14일 오전) 요약보고서

본 회의는 오전 10시 10분에 열렸다.

인권규약 제40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안건 4)(속행)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CCPR/C/68/Add.1)(속행)

1. 의장 : 이사회의 위원들에게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서의 검토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남은 발언자들로 하여금 한국대표단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2. 헤른들(Herndl) 위원 : 이사회에 한국의 고위 대표단이 참석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고 이사회의 지침대로 준비된 보고서의 수준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였다. 그는 대한민국정부가 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그 영역

내의 사람들이 직접 이사회에 통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것에 대하여 따뜻하게 축하하였다.

3. 인권규약의 한국 국내법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그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일반적인 법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국내법체계에서 인권규약의 우선적 효력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규약을 헌법적인 법률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인권규약의 규정과 상치되는 법이 차후에 제정된 경우, 인권규약이 일반적인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면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인권규약의 일부 규정이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는 또한 인권규약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위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인권규약은 대한민국 내에서 법집행기관, 즉 행정부와 법원에 의하여 직접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장치에 대하여, 그는 개인에 의한 청원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왜냐하면, 법은 단지 국가가 그러한 청원들을 고려할 의무만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청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보고서 제14항에 언급된 구제장치가 동시에 신청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청원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그는 보고서 제10항에서 언급된 검사의 역할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원하였고, 검사의 독립성 보장 및 검찰청에 의하여 설립된 인권상담소에 주어진 특정한 또는 일반적인 책임에 대하여도 설명을 원하였다.

5. 인권규약 제2조의 시행에 관하여, 인권규약 제2조는 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단지 특정한 이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수정을 요할지도 모른다. 인권규약 제6조의 시행에 관하여 이사회는 이미 사형은 가장 가증스럽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분명히 언급하였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러한 형벌을 유지할 것을 결정한 이유를 주의깊게 생각해낸 것에 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는 국내법 하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사형까지 광범위하게 변동될 수 있는 것 중에서 사형이 실제로 적용되는 상황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국가보안법 제12조는 무고를 행한 자는 그 상응하는 조문에서 규정된 형벌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응하는 조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다.

6. 인권규약 제9조의 시행에 관하여 그는 보고서 제153항에 표현된 추론의 논리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의 견해로는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부당하게 지연된 구금으로 인하여 구금중 행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집견교통권에 관하여, 예를 들면 보고서 제168항은 수감자는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과 면회가 허용되고, 면회가 수감자의 사회복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는 예외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최근에 이사회의 관심을 끈 장의군사건에 관하여 정보를 요청하였다. 장의군은 명백히 사상범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대전교도소에서 면회가 금지되었다. 그는 한국 당국에 대하여 '사상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위가 수감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취해져야 하는 조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7. 인권규약 제15조의 시행에 관하여, 특히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하여, 어떠한 법이 위헌이라고 선언되면 그 법은 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왜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하여 언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는 또한 인권규약 제27조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이

거의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제312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표현된 점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다고 하였다.

8. 히긴스(Higgins) 위원 : 한국대표단을 환영하고 이사회에 따라 주의깊게 작성된 상세한 보고서에 대하여 한국정부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9. 그녀는 한국 당국이 어떻게 일반국민에게 한국정부의 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 가입이 가지는 의미를 홍보할 것인지, 일반국민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대화내용 — 특히 당사국의 정기 보고의 검토에 이어 행하여진 최종 논평 — 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정부가 개인의 통보에 관하여 이사회가 선택의정서에 따라 결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어떻게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사회에 다른 위원들처럼, 그녀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보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철회되기를 희망하였다.

10. 인권규약 제6조의 시행에 관하여 그녀는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형법의 개정계획을 환영하였다. 그녀는 시위중의 무력사용에 대하여 경찰에 어떠한 지침이 내려졌는지를 알고 싶어하였다. 인권규약 제7조의 시행 및 보고서 제136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녀는 헌법의 연구만으로 법집행공무원들의 고문을 근절시키기 충분하지 여부 및 고문의 금지에 관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약속에 관하여 지침을 주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닌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보고서 제137항은 29명의

공무원이 고문을 행함으로써 기소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소송절차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녀는 몇 명의 공무원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그녀는 또한 누가, 어떠한 기관에서 조사를 하였으며, 정부가 소추된 사람들의 상급자에 의하여 재판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지,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독립된 기구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1. 인권규약 제6조의 시행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그녀는 1975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형법의 개정초안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초안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였다. 기소 전 구금에 관하여 그녀는 헌법재판소가 구금이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한 것을 지적하였다. 그녀의 견해로는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의 규정 및 이사회에 일반적인 논평 및 결정을 염두에 두면 최대한 50일이 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축소는 아직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녀는 또한 고문에 의한 자백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받고 수년 동안 구금된 사람들의 사건을 재심리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그런 사람들은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가?

12. 인권규약 제14조의 시행에서 그녀는 특별소추기관 및 특별공공보안법 법이 있다는 사실이 무죄추정원칙의 실현

에 위협을 가져오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법원에 대하여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침이 시달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하였다. 그녀는 또한 일부 재판이 교도소에서 행하여진다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다. 전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처럼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고인들은 가족들이나 친구들에 의하여 방어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은 구금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13. 인권규약 제19조의 시행에 관하여, 그녀는 대한민국에 아직 약 40명의 정치범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그녀는 이러한 수감자들이 그들의 견해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한 석방되지 아니하는 조건이 인권규약의 규정과 합치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녀는 또한 국가보안법의 일부 규정이 특히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자들 혹은 정치적인 반대자들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인권규약 제21조의 시행에 관하여 그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1989년 최근 개정에 주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회합이나 시위를 조직하기 위하여 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및 허가가 거절된 회수와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였다. 1989년 공포되어 형의 복역을 마치고 석방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사회보호법에 관하여 그녀는 원칙적으로 사회에 대한 빛

을 갖은 사람은 어떠한 감시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를 펴려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러한 법률이 왜 공포되었으며, 특히 그 규정들이 인권규약의 규정들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14. 프라도 발레호(Prado Vallejo) 위원 : 대한민국이 인권규약 및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인권의 전면적 보장을 향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였다. 그는 또한 이사회에 지침에 따라 준비된 당사국의 보고서에 대하여도 만족과 함께 환영을 표시하였다. 보고서는 인권규약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국내법에 관하여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 법의 실제적 적용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고 있지 아니하다.

15. 이사회에 다른 위원들처럼 그는 대한민국이 인권규약의 일부 규정에 대한 유보, 특히 제14조 제5항 즉 일반법원에 의하여 과오가 행하여진 경우 상급법원에 의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당연하고 본질적인 권리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을 희망하였다.

16. 대한민국이 이룩한 괄목할 만한 발전노력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북한과 인접함으로써 인한 긴장의 완화 및 인권침해를 가져올 뿐인 적대감 및 폭력성의 해소에 상당히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이산가족 및 그들의 재결합이라는 심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

였다.

17. 그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북한주민과 대화한 사람은 누구나 체포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구금된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무자비한 조치가 취하여진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의 견해로는 이러한 것들은 더이상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관행이다. 그는 또한 국가안보에 관한 법이 정치범들이 형을 복역하고 석방된 후 매 3개월마다 경찰서에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한 통산보다 훨씬 장기인 50일 동안(제154항) 경찰이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18.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고문에 관한 불평이 많았다. 예를 들면 고문행위에 대한 불평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국이 조사를 시작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는 인권규약의 시행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규정 및 방금 언급한 불평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구금자가 고문당했다는 불평이 있는 경우에 적십자와 같은 독립된 기구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구금자를 만나 그러한 불평들이 사실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19. 인권규약 제4조와 관련된 보고서 제89항은 헌법하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공공복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그는 또한 재판 전에 구금이 가능한 최장기가 얼마인지, 구금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므로 구속적부심에 의한 구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20. 그는 집계된 숫자가 대단히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정치범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구금된 구금자들에게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 중에 감형이나 다른 법률에서 일부 수감자들에게 수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면조치가 취하여졌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범들 중 공산주의자였거나 공산주의자로 인정된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들로부터 명백히 수혜받을 수 없었고, 이는 기본적인 인권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다.

21. 대한민국이 인권규약을 비준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 구제조치 및 그들이 이용가능한 보장장치들을 알 수 있도록 비록 국제적 문서로라도 그 내용이 출판되고 배포되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이러한 배포는 인권규약의 시행에 중요한 것이다.

22. 웨너그렌(Wennergren) 위원: 헌법 제107조 및 행정규제조치, 특히 대법원이 명령 및 행정규칙의 합헌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할 권한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보고서 제14항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대한민국에는 행정법원이 없는지 및 대법원이 최고 행정법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그는 또한 대법원에 사건을 제출하는 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23. 제6조 및 사형에 대하여, 그는 보고서 제112항에서 사형이 가능한 최소 연령이 현재 18세이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선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놀랐다. 그는 이 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사형이 교수형으로 집행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낙태에 대하여 보고서 제110항은 우생학적 이유에 의한 자발적 임신의 중단은 허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성은 이러한 이유로 낙태할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 및 태아에 대한 진단이 수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였다.

24. 제7조 및 고문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고문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소추 및 그들에게 부과된 형벌에 대한 통계자료를 요청하였다. 제8조 및 구금 중 강제노역에 대하여 보고서 제145항은 형법에서 징역형에 대하여는 '일정량의 노역'을 규정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는데 그 개념의 정의를 요청했다. 그는 또한 독방구금 및 그것이 이용되는 경우와 수감자들이 이러한 조치에 처해지는 조건에 관한 통계자료를 알고 싶어하였다.

25. 보고서 제246항은 표현의 자유라는 제하에 국가보안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보고서상의 기재는 작성자가 실제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양심의 자유

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헌법 제37조는 기본적 권리들이 국가안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고서 제244항). 그러나 양심 또는 의견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행형제도'라는 제하에(제165항)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개조하고 재활하여 건전하고 안정적인 인격을 배양함으로써 그들을 사회의 정상적 생활로 복귀시킨다는 행형법의 목적이 언급되고 있다. 그의 견해로는 이것은 사상주입의 일종이다.

26. 의장: 대한민국의 최초보고에 대한 검토의 첫 회의는 이사회 위원들이 당사국의 대표자들에게 차후에 답변할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이제 끝났다. 본 회의는 벨라루(Belarus)의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하여 휴회한다.

본 회의는 오전 11시 10분에 휴회하여 오전 11시 30분에 재개되었다.

문서번호 CCPR/C/SR. 1154

인권이사회

제45차 회기

1154차 회의(1992년 7월 15일 오후) 요약보고서

모임은 오후 3시 15분에 속개되었다.

1. 의장 : 이사회 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의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한국 대표단을 초청했다.

2. 박수길(대한민국) : 인권분야에서 한국의 성취를 평가해준 이사회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제기한 질문에는 많은 오해가 있었다. 이는 아마 정부로부터의 정보 부족 혹은 고립된 인권침해 사례를 과장하려는 특정 당사자의 고의적인 시도 때문인 것 같다.

3. 1987년 6월 29일 민주화를 위한 선언은 한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새 헌법에 구현된 일련의 민주적 개혁으로 인해 진야당 지도자들은 199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고, 언론은 제한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국민의 인 권은 보장받게 되었다.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당은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데 거의 실패했다. 국회는 자주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이를 설명하도록 했다.

4. 이사회 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몇몇 평가를 통해 보면, 위원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17개의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또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에도 제한을 가하였다. 위원들은 정치범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률전문가들은 경찰공무원을 해치거나 국가기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소추된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을 '사실상의 헌법'처럼 기술하고, 한국에서 사회불안이 매우 커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추론하고 있다. 그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5. 이사회 위원들이 질문을 준비하는 데 사용하였을 일부 자료들—특히 한 출처—은 객관성, 균형성과 정확성이 현저히 결여된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의

출처는 남북한이 1992년 3월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국제연합 사무처에 남·북한 협정을 등록하였다고 기술하였다. 실제로는 그 협정 자체에도 그것은 국제적인 합의로 간주될 수 없는 것이라고 아주 명백히 기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출처는 한국 내에서 맑스와 레닌의 저작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에이치 카(E. H. Carr)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mings)의 저작도 금지되어 있다고 함부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학생 시절에 그 저작들을 읽었으며, 그 저작들은 여전히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다. 어떤 책의 단순한 소지나 탐독은 한국에서는 범죄가 아니다.

6. 남북관계는 인권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지난 한해 동안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조인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양측 사이의 대화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1992년 5월에는 통일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집행하기 위하여 3개의 실무기구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그가 상호양보의 정신으로 곧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쌍방의 핵문제에 대한 견해차이는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았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할 것도 기대되었다. 현재는 이산가족들이 서로 전화통화나 편지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다.

7. 한반도 통일은 자주·평화·민주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한국정부의 방안은 잠정적인 한민족 공동체를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평화공

존, 민족공동체의식, 남북한의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것이다. 공동체는 각 수도의 연락사무소와 대통령 회의, 각료회의, 대표자회의 그리고 공동 사무국으로 구성될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입법기관—대표자회의—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일한국의 헌법을 초안하여 공포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헌법 하에서 총선거를 열어 통일의회의와 정부를 선출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대측은 통일에 대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고 이는 현재 대화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8. 유국현(대한민국) : 많은 위원들이 한국헌법과 인권규약의 관계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고 말했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인권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인권규약에 포함된 모든 보장이 국내입법에 의하여 뒤집힐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의심은 한국정부의 인권에 대한 약속과 정부의 홍보 덕택에 인권규약에 구현된 권리에 대한 공공의 증진된 의식을 폄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권규약에 규정된 주요한 권리는 헌법에도 역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어떠한 국내법률도 위헌으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개인이 인권규약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은 국내법률을 바탕으로 통상적으로 규율할 것이다. 드물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권규약이 법원에 의하여 직접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9. 헌법 제37조 제1항은 자유와

권리는 인권규약(‘헌법’의 오기인 것으로 보임 -역자주)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동조항은 정부가 유보한 것을 제외하고 인권 규약상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망라한다고 보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10.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한 엘 샤페이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인권 규약에 대한 선택의정서상에 규정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사회가 선택의정서에 따라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에 관한 히긴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단지 정부는 앞으로의 입법에서 이사회 의견 반영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른들 위원은 청원에 의한 구제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청원자에 의하여 제기된 청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다루어지고, 만일 청원자가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그는 자동적으로 법원에 제소할 권리를 가진다.

11. 대한민국정부는 안정파괴와 군사도발의 매우 실질적인 위협에 대처하면서 북한과 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상대방이 대외정책수단으로서 폭력주의의 사용을 중지할 때까지는 한국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북한이 현재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심경변화의 조짐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그것은 국가안보와 민주질서를 위협하게 하는 파괴적인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만 사용

된다.

12. 국가보안법 제7조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그러한 제한들은 범위를 훨씬 넘는 것이다. 제3조와 제7조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후자의 조항들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만을 금지시키고 있다. 제10조는, 역시 비판의 대상이지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13.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0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을 동법에 반영하였다. 결정은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명백한 공산주의자의 활동, 국토 침탈, 헌법체계의 파괴를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행위”는 폭력이나 자의를 배제한 다수결의 원칙과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 법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즉, 기존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반국가단체”라는 용어는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거나 전복하려는 조직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단순히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공산주의 이론을 표현하거나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을 말하여도 그러한 감정이 불법적인 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로 될 수 없다.

14. 사내 위원은 국가보안법상 간

첩의 정의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그 개념은 실질적으로 형법상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국가기밀의 수집, 누설, 전달(군사기밀 이외에도 정치, 경제적 정보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 조항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하는 정보만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게 하는 정보라는 점을 알면서 북한으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 명백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모든 경우에,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는 헌법의 모든 보호를 받는다.

15. 국가보안법의 개정은 효력이 소급되지 아니한다. 구법은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여전히 적용된다. 국내의 법률전문가들은 개정법률이 구법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의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소급되지 않는다고 한다.

16. 이사회 위원들은 검찰청의 역할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검사는 행정부의 관리이고, 법무부에 속하며, 검찰청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다. 검사들은 매우 경쟁률이 높은 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연수과정을 거쳐 판사와 같은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탄핵이나 특정범죄의 유죄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되지 아니하고, 급여액은 보장된다. 그들은 사건을 수사하여 기소하고 경찰을 지휘감독하며 법령의 적용을 법원에 청구한다.公安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는 별도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국가안전기획부라는 기관은 공산주의자와 파괴활동에 대한 국내정보를 수집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포함한 몇 가지 한정된 사건에 있어서의 수사업무를 수행한다.

17. 법원은 세 단계가 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과 권한쟁의에 관하여 심판한다. 판사들은 10년간 임용되며 연임될 수 있다. 그들은 탄핵이나 특정 범죄로 유죄를 받지 않는 한 해임되지 아니하고 정치적 행동은 금지된다.

18. 헤른들 위원과 다른 위원들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가능한 차별의 몇 가지 이유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차별금지사유인 나열은 순전히 열거적인 것이고 그 이외에 정치적 견해 차이와 같은 다른 이유의 경우도 배제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19. 아길라 위원은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외국인의 권리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외국인은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나 정부는 외국인을 계약방식으로 고용하고 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만이 투표와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

20. 사내 위원은 “합리적인 문화적 차별대우”라고 규정된 것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그 용어는 개인의 교육적 성취를

기초로 한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21. 여성의 사실상의 지위에 관하여도 질의되었다.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직업을 가지고 있고, 학계의 고위직에 있는 여성도 거의 없다. 저소득층 가족을 위한 충분한 탁아시설이 없고,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전통적인 인습을 혁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복지시설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22. 1945년 국적법에 따르면, 여성은 결혼으로 남편의 국적을 따르고 남편이 귀화하면 귀화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대한민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유보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적법을 세계기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3. 비상사태에서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은 특정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용어에 의해 인권규약 제4조 제2항 소정의 제권리는 보호된다. 헌법 제76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긴급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회가 그 후에 긴급명령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하면 긴급명령은 즉시 철회된다.

24. 프라도 위원은 헌법, 형법과 국가보안법상의 특정의 매우 한정된 상황하

에서의 제한에 관하여 '국가안보',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의 정의와 적용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국가안보'는 외국 침략과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를 의미한다. '질서유지'는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공공 사회질서의 유지를 의미한다. '공공복리'는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의미한다. 공공복리는 경제 사회적 권리, 환경, 토지사용, 도시계획, 녹지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사용될 때 질서유지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의미로 쓰인다.

25. 디미트리제빅 위원은 낙태법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비록 형법상 낙태가 처벌받기는 하지만 모자보건법은 강간, 근친상간, 모친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형법을 개정하여 위 예외들을 감안하여 개정할 것을 고려중이다. 우생학적인 이유로 인한 낙태에 관한 보고서 내용은 (CCPR/C/68/Add.1, para. 110) 태아가 심하게 변형된 경우를 포함한다.

26. 사형제도로 돌아가, 그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이외에 15가지 범죄가 형법상 사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사네트 위원이 언급한 바대로, 사형은 강도의 경우에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가중된 경우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사형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드문 예외이다. 정부는 이미 극형의 수를 줄였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27. 이사회 위원들은 국가보안법상의 50가지 범죄가 사형에 처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범죄를 취급하는 것이다—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행위—, 그리고 국가보안법상의 내란 목적살해죄 같은 많은 범죄는 이미 형법상에서 망라되는 것이다. 행정법에 의하면 사형은 교수형으로 집행된다.

28. 몇몇 위원들은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에 대한 보호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자백이 자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조사중 변사한 이래, 5명의 경찰간부가 유죄판결을 받고 3년에서 1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웨너그렌 위원이 고문으로 처벌받은 경찰간부의 숫자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그는 6명의 경찰간부가 2~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9개의 사건이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유치장은 정기적으로 감찰된다. 검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수사기관의 유치장을 감찰하고, 법무부는 적어도 1년에 10회 모든 감옥을 감찰한다. 비인간적 대우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즉각 수사한다.

29. 사네트 위원은 박기래사건을 언급하였다. 그의 유죄는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였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문에서 얻은 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박기래의 형기는 모범적인 수형으로 감형되었고, 그는 1991년 5월에 가석방되었다.

30. 히긴스 위원은 장기수의 상황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그러한 수형자들

은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하거나 자유민주 질서체제를 파괴하려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유죄를 받은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석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수형자들을 석방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가석방 신청에서 그 점을 고려한다.

31. 보고서 제154항에 언급된 구금기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이 있었다. 이는 구속일부터 최종법원의 판결일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한 구금은 6개월 이상 연장될 수 없고 법원은 그 기간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혐의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을 어떻게 검토하는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는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나 다른 가족들,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즉시 사안을 심리하여 신청을 기각하거나 구속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검사, 피의자, 변호인과 청구인은 법정에 출석할 수 있고 그들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체포나 구속은 구속자의 가족에게 즉시 통보되어야 한다.

32. 수감자의 대우에 관한 인권규약 제10조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가 제기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제18조, 제19조와 관련하여 수감자에 대한 교정교육에 관하여도 질의가 있었다. 처벌과 함께 교정제도의 목적은 재범방지와 수감자의 사회복귀이다. 후자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감자들은 범죄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건전한 시민가치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교육을 받는다. 그러한 수감자 교육프로그램은 모든 현대적 수감제도의 것과 공통된다. 국가보안법상의 수감자도 또한 수감자를 사회에 재진출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정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거기에는 대립이데올로기에 관한 의견교환이 포함된다. 수감자가 민주적인 이상을 갖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비교토론하는 것이 "강제전향"을 구성하지 않는다. 신념이 행동으로 표출될 때 사회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감자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 예외를 차치하면, 모든 수감자들은 가족면회를 포함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제한이 가하여지는 아니한다. 친족, 친구들과의 면회는 30분 동안 허용되며 그 면회시간은 교도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연장될 수 있다.

33. 미결수는 친족들이 하루에 한번 면회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1월에 행정법 제62조는 미결수에 대하여 변호인과 교도관의 입회없이 접견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정부는 위 결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질의가 된 '건전한 국가관'이라는 용어는 한국어를 직역하려는 시도였고 수감자의 도덕의식의 회복으로 번역될 수 있다. 보고서 내의 '발언금지 수단'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재갈을 의미한다.

34. 제12조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련하여 안도 위원은 남한사람의 북한방문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평화적 통일의 갈

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여행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제12조 제3항에 따라 약간의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제한이 곧 해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정부의 승인을 얻어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승인하고 있다. 주민등록에 관하여 주민등록법이 적용된다.

35. 제13조와 관련하여 베트남 보트 피플 처리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함께 보트 피플에게 그들의 최종목적국이나 그들을 받아주는 제3국에 정착할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1,220명의 보트 피플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제3국에 정착하였다. 154명의 보트 피플들은 아직도 임시수용소에서 살고 있다.

36. 인권규약 제14조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는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부분적으로 영미의 당사자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을 규정한다. 피의자는 그의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와 교통할 수 있고, 변호인은 수색영장의 집행, 증거질차, 구속적부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변호인교통권에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는 보고서 제153항 신속재판의 마지막 문장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7. 군사법원에 관하여 군사법원법은 군사법원의 특유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와 같이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유일한 예외는 항소권의 제한이다. 간첩죄와 같은 특정한 범죄에서 군사법원은 최종적 단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자동적으로 상고되도록 되어 있다. 일반시민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반시민이라도 군사법에 관한 간첩죄, 군에 대한 유독음식물 공급, 전시포로에 관한 죄 등을 범한 경우와 계엄법 아래서는 군사법원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211항의 '비상법'이라는 용어는 전시 및 그에 준하는 상태에서 선언되는 '비상계엄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38.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제19조와 관련하여 질의가 제기되었다. 그는 한국에서는 검열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금서목록이 없다. 맑스, 레닌을 포함한 공산주의 저작들을 자유로이 서점이나 대학도서관에서 이용가능하다. 학술적 행위에는 검열이 없다. 국가보안법상 국가를 혼란시킬 수 있는 선전은 제한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는 혼동이 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선전물을 출판, 복제, 반포, 운반하는 것은 금지된다.

39. 다른 매체의 예방적 검열과 관련하여 공연법, 영화법,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등 3개의 법이 영화, 음반, 테이프를 공적인 질서와 도덕을 유지시키는 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들은 한국헌법 및 인권규약 제19조와 관련이 있다. 영화제작자들은 등록

하여야 하고, 영화는 어린이들을 무차별한 성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등급이 매겨진다. 공연법하에서는 한국과 수교가 없는 나라의 작가가 쓴 대본이나 시나리오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심사된다.

40. 공중집회에 대한 사전 신고 요구에 관하여 히긴스 위원이 질문을 하였다. 집회나 시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 경찰은 그 집회가 금지된 장소나 시간에 열리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교통방해를 일으키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그것을 심사한다. 그것이 규정에 적합한 때는 그 집회나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폭력이 일어날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든지, 공공의 질서와 안전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내려지고 그 취소는 법원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폭력의 위협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집회나 시위의 목적, 주최자의 과거 경력, 그들의 시위 참가자에 대한 통제력, 예를 들면 경찰서에 대한 공격이 기도되지는 않는가 등의 시위계획 등을 포함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진다. 1991년 7월 1일 정부는 집회 및 시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의 보다 나은 보호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집회의 금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41. 마브로마티스 위원의 교사와 언론인의 특정정당 가입금지조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정부는 교사나 정치인에게 는 정당정치에의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정당법은



인권규약 제25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조항을 포함하는 특정사건이 법원에 제소된다면 법원은 정부의 의견을 조사할 기회를 얻는다.

42. 정당해산의 근거에 관하여 질문이 제기되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는 그 정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의 해산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

43. 아동노동의 보호에 관한 인권규약 제24조에 관하여도 질문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술집이나 유흥업소의 아동고용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들은 경영자에 대한 교육과 그 시설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44. 헤른들 위원의 인권규약 제27조와 관련한 소수민족문제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한국은 4,000년이 넘는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단일민족국가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중국인 23,500여 명을 포함하는 51,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거주한다. 1991년에는 80명 정도가 국적을 취득하였고 그들은 대부분 중국인이다. 그들 모두는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 인권을 향유한다.

45. 결론으로 그는 한국의 인권에 관하여 사려깊고 광범한 질문과 언급을 한 이사회 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46. 의장 : 이사회 위원들을 소집하여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언

급하도록 하였다.

47. 웨너그렌 위원은 한국 대표단의 답변이 이사회가 한국의 인권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국 대표단의 답변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헌법이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의 민주적 상태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전적으로 명료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헌법에서 사상의 자유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 영역에는 개념적 전통이 있고, 사상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포괄된다는 주장은 인권규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7조의 소위 우산조항(Umbrella clause)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절하지 못하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라는 확고한 구조가 필요하다.

48.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두번째 정기 보고서가 제출될 때는 그 단어의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기를 희망하였다. 제37조에서 말하는 자유와 권리는 모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헌법에서 그것들이 경시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49. 그는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면

그 사안을 다시 검토하여야만 하는 구속적부심에 관한 답변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체포된 모든 사람은 즉시 법관에게 인도되어야 하고, 억류자나 그 가족은 특별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인권규약 제9조 제3항에 맞추어 구속에 관한 법규를 채택하는 조치를 하여야만 한다. 그는 또한 국가보안법상의 구속도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보안경찰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 점도 역시 2회 정기보고서에서 답변되어야 할 것이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영역은 어려운 것이고, 비밀경찰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싫어함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이 부분에서도 보호받아야 하고 이 보고서와 답변으로 한국의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가 명확하지 않다.

50. 이사회는 보고서와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으로부터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2회 정기보고서에서도 더 많은 내용을 알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의 대표단 역시 인권규약과 한국의 절차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51. 히긴스 위원은 이사회 의 질문에 세부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해준 대표단에 감사하였다. 그녀는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있을 앞으로의 변동과 접근방식의 현저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자신이 이사회 위원들의 전형적인 경우로 믿는다고 하였다. 그녀는 대표단에게 이사회

언급은 단지 이러한 과정을 나아가게 도와주기 위한 의도로 제시되는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녀는 또 이사회 위원들이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게 되며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조사와 접근에 의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그녀는 한국이 인권규약 당사국이 되고 선택의정서를 비준하고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 것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그녀는 역시 인권규약의 유보를 철회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기쁘다고 하였다. 그녀는 또한 국가보안법 적용의 축소와 법률구조와 관련하여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듣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녀는 이제 국내의 반대자들도 허용되었고, 헌법재판소도 활발하게 독립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시에 더 많은 것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도 명백하다. 다음 과정은 존재하거나 계류중인 법률에 대하여 헌법적으로가 아니라, 인권규약에 일치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적인 바와 같이 헌법 그 자체로는 인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모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52. 국가보안법의 축소적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한 법률의 계속적 필요를 문제시하였다. 답변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존재목적은 반민주적인, 특히 공산주의 국가의 수렴을 지지하기 위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통제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복함으로써만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으로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처할 수 있다. 그녀는 예를 들면 살인죄는 이미

형법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 일반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보안관찰법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간첩죄의 정의와 관련하여 국가기밀의 광범한 인정은 남용될 위험이 있다.

53. 그녀는 인권규약 제6조와 관련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죄의 항목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죄수의 사회복귀는 계속 우려되는 문제이다. 그녀는 기술된 바와 같은 교육과 토론 및 석방규율조건이 통상적 의미의 사회복귀를 이루기보다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인권규약 규정 침해가 강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회나 시위의 사전 허가문제에 관하여 그녀는, 허가는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집회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집회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고문의 통제 및 그와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과 관련하여 안기부에서 제공된 정보와 기소의 결과는 흥미로운 것이다. 구속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는 구속이 실행되기 전 신문하기 위한 기간의 문제이다. 그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알고 있고, 그녀가 이해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안기부에서의 20일에 더하여 검찰에서 3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안기부의 활동은 일반기관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민주적이고 독자적인 통제가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도 없이 법원에 가기까지 너무나 기간이 길다. 인권규약 제92조 제3항은 수감자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에 회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녀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간은 국가보안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기간에 비하여 현저하게 짧다.

54. 끝으로, 그녀는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잘 준비해준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대표단이 이 토론에 훌륭하게 기여한 것을 치하하였다.

55. 필러슨 위원은 이사회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껏 답해준 대표단에 감사사를 표하였다. 그러나 몇 개의 질문에 대한 날카로운 답변은 놀라웠다. 한국에는 인권이 없다는 것은 이사회의 의견은 전혀 아니다. 물론 많은 관심이 표현되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위원들은 특히 최근에 일어난 진전들에 대하여도 언급하였다.

56. 그의 관심 중 하나는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오로지 정부 허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제한은 인권규약에 부합하지도 않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 확실히 그러한 방문은 단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뿐이다. 진실로 민주적인 국가는 전체주의 국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한 국가의 사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57. 그의 주된 관심은 한국의 몇 개 법 특히 국가보안법에 관한 것이다. 히긴스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법 특히 특별형법 등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한 침해를 충분히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은 불필요한 법이다. 그 법은 '건전한 국민정신'과 같은 광범한 개념을 사용하는 등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58. 다시 대표단은 국가안보를 위

협하게 하는 선전은 금지된다고 하였다.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선전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개념은 단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

59.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수가 아직도 너무 많고 그 수가 줄어들기를 바란다.

60. 민간단체 보고서에 대한 이사회의 태도와 관련하여 위원들은 국가측 보고서를 평가할 때 많은 곳으로부터 자료들을 추출하여 이용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전적인 가치를 두지는 않고 종종 정부대표단의 언급 등의 다른 근거로부터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받아들인다.

61.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정부가 인권규약에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선택의 정서까지 비준한 것을 축하하였다. 한국은 훌륭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토론에 협력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개선시키기 바란다고 하였다. 어떤 국가도 인권의 천국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개선의 여지는 항상 있는 것이다.

62. 헤른들 위원은 이사회 위원들의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고서에 대하여 대표단에 감사를 표하고 이사회 위원들은 한국의 인권규약 당사국 가입, 선택의정서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을 환영한다고 하였다. 새로운 헌법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에 인권상황의 근본적인 변화

가 있음은 명백하다.

63.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의심할 바 없이 공공질서와 관련이 있는 면은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과도하게 강조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히긴스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 형법을 사용하여 그것을 통제하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앞의 발인자들과 같이 그는 지워지지 않는 의문을 표명했다. 국가보안법은 실제로 필요한가? 사형에 처하는 죄를 규정한 많은 죄를 줄이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가? 10여 년의 기간에 82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권규약의 정신과 조화되기 어렵다. 모든 국가에서 경찰활동을 감시하여 두어야 할 필요가 항상 있고 대표단은 한국 역시 이러한 필요가 있음을 인식해야만 한다. 국가보안법상에서 행해지는 장기간의 구속은 이러한 우려의 원인이다.

64. 결론으로 그는 이사회의 위원들이 행하는 언급은 정부로 하여금 항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도와주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5. 샤네 위원은 이사회 위원들이 제기한 많은 질문들에 답변해준 대표단에 사의를 표하고 잘 준비된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였다.

66. 그녀가 관심을 갖는 문제는 민간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한 숫자의 정치범—그녀는 사상범으로 불렀음—이 아직도 구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표단이 언급한 정부전복의 음모에 관하여는 정부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집단의 합법적 목적이고 민주적 과정의 필수적 부

분이다. 그 목적을 위해 폭력을 사용할 때만 비난할 수 있을 뿐이다. 그녀에게는 '사상범'을 구속시키고 있는 것은 정치적 반대를 감금시키는 것만큼 위험하다. 국가보안법을 옹호하기 위해 언급된 바 있는 테러리스트에 의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같은 끔찍한 행위는 비참한 일이다. 기는 하나, 다른 많은 국가들 역시 테러의 희생자는 있고, 그러한 행위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제한을 쓸어버릴 정도로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인권규약은 긴급상황에서 약간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광범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67. 이사회는 위원들에게 주어진 국가보안법 제4조와 제7조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국가에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것을 평가함에 있어 국가에 광범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간첩죄 등의 예에서 보듯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시민들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그것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법률은 인권계약 제15조, 제18조, 제19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68. 주어진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의하여 아직도 사형이 선고된 많은 수의 사례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였다. 예를 들면 강도치사의 경우는 아마도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하여만 사형을 선고하도록 제한하는 인권규약 제6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제로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는 것

을 삼간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범행 집에 사형을 존치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웨너그렌 위원과 해른들 위원에 의해 제기된 기소전구속기간 문제에 대한 우려에도 동의하였다.

69. 결론으로 그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진실로 민주적인 체도를 향해 발전하고 있음을 치하하였다.

70. 안도 위원은 대표단이 이사회 위원들의 질문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그전의 발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 보고절차의 주된 목적은 한국정부와 건설적인 대화통로를 개설하고 현존하는 인권에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사회는 어려움에 처한 인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다.

71. 그는 그 전의 발언자들에 의하여 제기된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그것은 이미 해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중 하나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남녀의 불평등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유교적이고, 역사적인 전통에 의하여 야기되었던 것이긴 하지만 사회정책의 목표는 인권규약의 목적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였다. 그는 또한 너무나도 긴 재판전 구금기간—확실히 재문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시하였다.

죄수들에 대한 대우에 관하여 그는 민주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노력과 관련하여 강압에 의해 그들의 신념이나 확신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간에 어떤 종류의 강요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참정권과 관련하여, 교사들과 언론인들은 그들의 선택에 따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최근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으므로 그 단체의 많은 인권규약들이 한국의 미래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대표단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다. 동법의 매우 모호한 용어와 넓은 적용범위—특히 반국가행위와 관련하여—는 특별한 위험을 야기한다.

72. 그는 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곳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북한의 정책에 의하여 파생되는 어려움들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변화는 일어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여 민주주의는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도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민주주의를 독재체제와 냉철히 비교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장점들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처럼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큰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발전은 그 자체에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대립을 자주

유발시킨다. 위 노사 양측이 상대방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최대의 능률과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인식은 매우 본질적인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이고, 이와 같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배우는 것은 특히 어렵다. 인권의 추구는 인내심을 발달시키고 다른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과정의 하나이다. 틀림없이 한국은 올바른 길로 들어섰으며, 과거의 구태와는 분명히 단절되어 있다. 한국이 동 이사회에 다음 보고서를 제출할 때쯤이면 인권상황의 개선은 명백할 것임을 그는 확신했다.

73. 아길라 위원은 한국이 동 인권 규약에 찬성하고,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였다는 점과 동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한국이 수준높은 대표단을 파견하였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한국이 인권의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는 대표단이 이사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질문에 성실히 응답한 점에 대하여는 고맙게 여겼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답변이나 설명에 대하여는 우려를 표하였다. 특히 그는 국가보안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에게 동법은 한국의 입법에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사용되는 정의규정

은 더이상 정의규정이 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다. 법률은 인권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제2조와 헌법 제37조의 규정에서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들 - 사실상 보고서 자체에서나 모든 법률에서 이와 같은 수 없는 용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박수길 대사는 이미 없어진 과거의 단면들을 이야기하였으나, 유국현 과장은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차별이 아직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큰 변화들이 있었고, 이제껏 이루어져왔으며, 현재는 전환기이자 희망의 시기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히긴스 위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대중의 마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모든 민주주의 체제에 부여된 주된 임무이다. 국가보안법처럼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74. 그는 사형제도의 적용에 관하여 진술한 부분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가 50개가 된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오직 국가의 안전을 해하는 반국가적 행동에 대해서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진술되었다. 그와 같은 답변은 그때까지 제기된 그 어떤 관심보다도 중대한 관심, 즉, 다소 특별히 제한된 50가지의 범죄에 대한 염려보다는 개념규정의 포괄성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라고 여겨지는 무수히 많은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켰다. 그는 절도죄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 중에 포함된 것

과 관련하여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국현은 그것이 극히 가중적인 조건하에서 저질러진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그러한 가중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그가 과거의 잔재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행동이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위와 같은 불확실성이었다. 그는 그와 같은 잔재는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였으며, 그리고 미래에는 결국 그 잔재가 모두 사라져버리길 희망했다. 그러나 인권규약과 현재 한국의 입법간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 인권규약은 일반적으로 한국이 갈망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다른 모든 법률 중 국가보안법에는 반국가단체의 구성과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자에 관련된 많은 제한이 있다. 그가 최근에 들은 조크는 미국과 소련의 민주주의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미국에서는 공산당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미국헌법은 실제 자유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은 본 인권규약에 찬성하면서 동 규약 제19조에 대하여서는 동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부당한 제한을 가한다는 관점에서 유보조항을 만들었고, 다른 유보조항과는 달리 이는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의 의견으로는 국가보안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본 인권규약과 극도로 상반된 (flagrant contradiction)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재소자들이 석방된 후 그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든다는 목적하에 시행

되는 재교육이다. 강압에 의하여 인간의 사상과 의견을 바꾸려는 그와 같은 시도는 명백한 인권의 침해이며 이는 인권규약 제14조와 명백히 상반된다. 한국이 그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좀더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을 없애는 것이며, 사회로 돌아가는 죄수들이 마음껏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선은 오로지 현존하는 질서를 자유로이 비판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성취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75. 프라도 위원은 대화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한국의 대표단들이 보여준 협조적인 태도를 치하하였고, 한국은 틀림없이 인권의 발전과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규약 조항, 특히 제2조 제2항이 완전히 적용되기 위해서는 뿌리깊은 사고습관과 인습이 극복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76. 그는 공공의 비상사태 개념을 극도로 넓게 해석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사회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이는 인권규약 제4조와 제9조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77. 진술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그 해석과 적용에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특히 막연히 국가안전과 정권의 유지에 위험한 것으로 분류된 행위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의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 - 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정치범들이나 양

심수들을 다루는 방법 - 과 재판을 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장기간의 구금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경찰이나 다른 공무원에 의해 자행되는 고문을 포함하는 직무권한 남용에 관한 강력한 주장에 대한 수사를 실제로 무력화시키는 재판기일의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의 수 또한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78. 이미 언급한 바도 있지만 그는 아직 과거의 상흔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노력을 알고 있다. 보다 더 높은 인권의 고양을 시도하는 사회개혁의 반가운 징후가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특히 동구권국가에서, 멸망해가는 독재체제를 뒤로 하면서 한반도를 두 나라로 갈라놓은 장벽이 곧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이 바라는 바와 같이 하루 빨리 통일이 되는 쪽으로 발전해나가기에 기원한다.

79. 디미트리제빅 위원은 한국 대표단의 상세한 답변에 고마와하면서, 한국정부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이사회는 항상 이해심있고 도움이 되는 태도로 다루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회의 진술이 의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는 의견을 무시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즉, 이 사회의 위원들은 언론외국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면역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80. 그는 한국정부의 구조상 국외로부터 전체주의의 급박한 위협에 대한 끊임없는 염려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위협

은 인권규약의 기본적인 사상과는 일치될 수 없는 논리에 계속적으로 구실을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보고서 제 103항의 세번째 문장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적어도 사형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가 언급했던 우려와 일관된 논리가 곧 과거지사가 되어 한때는 지독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이념들이 그 독성을 잃게 되고, 한국이 사상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였다.

81.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 법이 없으면 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인권규약 제15조의 조항에 관심이 집중적으로 모아졌다. 비법률가들조차도 사회에서의 행동을 안내하고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법률을 들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는 국가보안법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수와 고발, 증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폐해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동 법은 어떤 행동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밀성 등에 대한 불안과 무엇이 범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불안을 계속적으로 유발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국가에 의해 어떤 종류의 행동들이 실제로 장려되고 있고, 후원을 받으며, 용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들이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행동들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이미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한 끊임없는 보안관찰과 사람의 사상을 전향시키려는 계속적인 압력 그리고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병적으로 파고들어 조사하는 것과 관련한 격정스러운 현상이 있다.

82. 한국이 다른 분단국가들보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며, 그 성장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체제수호적인 강압은 버릴 수 있으며 법률에 의해서 이룩되는, 보다 더 뿌리깊은 민주주의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식되어야 한다. 그 체제가 좌익이든 우익이든 세계 어느 국가도 정치적인 극단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민주주의 사회라면 그와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불식시켜야 한다.

83.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 제출된 것 중에서 사실에 관한 부분이 상세하지 못하여 분명히 특출하지는 않지만 그 보고서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해 칭찬하였다. 그는 대표단에 감사의 표시를 하였으며 동 대표단은 그 토론이 유익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을 확신하였다.

84. 사다 위원은 한국에서 인권규약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기로 한 정치적 결정의 결과 인권의 태아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였다. 북한과의 계속적인 긴장은 의심할 바 없이 방해가 되는 점이고, 그 정치적인 결정의 결과는 아마 아직 완전히 정부의 다른 부처 — 경찰과 국가안전기획부 —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 동 부처에는

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동 이사회는 분명히 빠른 템포로 개선되어가는 것을 기를 바라고 동 이사회에 견해가 정당하게 검토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85. 느디아에 위원은 한국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발전, 인권분야에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였다. 주변국가와 어려운 관계에 있어 실제 행동이 인권규약 조항들과 양립할 수 없었다는 점이 불행이었다. 또한 오래된 질문인 “감시하는 자는 누가 감시하는가”의 문제는 많은 경우 관련 문제로 남아있고 진정 그런 문제는 제기되어야 한다. 분명히 신선한 자유가 더 확대될 여지는 있다. 두 개의 한국이 통일되면 분명 많은 문제점들이 제거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는 한국정부가 좀더 인권규약과 모순되지 않는 법치주의로 환원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86. 그는 전통적인 관습의 중요성에 관한 보고서상의 참고자료들을 흥미를 가지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전통은 고정성이라는 말과 동의어일 수 있으며 요구되고 있는 좀더 앞을 내다보는 접근방식이라는 것은 법률의 장점에 관한 많은 관심을 통하여 더욱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87. 의장은 한국의 대표단에 대하여 그 보고서의 질과 질의응답에 접근하는 개방적인 자세, 그리고 주어진 수많은 질문에 명확하게 이해가능한 답변을 해준

것에 대해 칭찬을 하였다.

88. 그 토론으로부터 도출된 가장 큰 결론은 한국정부의 헌신으로 지난 4년 동안 거대한 긍정적인 발전이 특히 헌법재판소의 감시기능 결과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당시 헌법은 인권규약상 설명되어 있는 모든 인권을 보장하는 데는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89. 이사회에 위원들은 국가보안법, 벌금형, 집회의 권리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는 그와 같은 관심들은 대표단에 의해 모두 정당하게 표명되었다고 확신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이사회에 새로운 절차에 따라 회기의 끝에 채택될 서면의견서는 공식적인 문서에 반영되는 비중있는 의견을 구성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그러한 의견은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현존하는 법률 개정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보다 더 중요한 발전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는 한국의 그와 같은 노력이 성공을 거두길 기원하였다.

90. 박수길(대한민국) : 이사회와의 회의는 인권문제에 관한 새로운 견해를 얻는 매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며, 그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국제사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는 점점 국제연합헌장 제2조 제7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더이상 배타적인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반가운 발전양상이다.

91. 이사회에 위원들에 의한 진술

처럼 그는 먼저 이상이 없는 현실주의는 부도덕하며, 현실주의가 없는 이상주의는 무력하다는 속담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는 국제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서 특별한 사정과 상황은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특별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국에서 '건전한 국가정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을 죄수들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이 표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상이 극악무도한 나치즘이나 히틀러리즘 같은 사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정부의 관심은 단지 죄수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가 그들의 나라에서는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단순히 확실히 해두겠다는 것일 뿐이다.

92. 결론으로 그는 한국이 그 역사상 처음으로 이사회에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회합에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한 발걸음을 디디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신중하게 고려한 결과 한국정부는 민주주의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그 책임감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시에 인권규약과 헌법하에서 보장된 인권과 자유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사회는 인권에 관련된 현안들이 국내의 다른 현안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93. 그는 건설적인 의견에 대해 이

를 환영하였지만 그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단은 1988년 이후의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만족한다. 긍정적인 평가는 인권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유발시킬 것이다. 비판은 좀더 개선이 요구되는 점에 대한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대표단은 이사회 앞에서 한국정부의 행동을 증명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인권에 관하여 요구되는 목표들을 향한, 어렵지만 가치있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리라는 결심을 표명하였다. 어떠한 나라도 인권에 관한 결백한 자료에 대해 불평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권규약에 따라 그 약속을 이행하려는 확고한 결심이다.

94. 그는 이사회 의원들에게 그들의 조언이 제대로 한국정부에 전달될 것이며, 시간 부족으로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질문에 대해서는 두번째 보고서에서 설명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95. 의장 : 한국 대표단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으며 한국의 첫 보고서에 대한 검토는 이와 같이 종료되었다고 말하였다. 두번째 보고서는 1996년 4월 9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회의는 오후 6시 20분에 폐회하였다.

## 자료

# 김보은 사건 감정서\*

김 광 일

귀원에서 의뢰해주신 사건 : 92 노 1511 살인건에 관련되어 있는 피고인 김보은의 정신상태에 관한 조사를 의뢰받고 다음과 같이 질의에 대한 의견을 올립니다.

계요지서

## 질의 및 이에 대한 의견

질의 1 김보은이 9세 때 의붓아버지 김영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12세 때 강간을 당한 이래 국·중·고·대 2학년 때까지 김영오로부터 성행위 불응시 김보은 자신과 어머니 김영자, 의붓형제에 가해지는 심한 폭행과 공포분위기 속에서 성행위를 강요당해왔고, 김영오의 철저한 통제·감시·구속과 지배를 받고 갇힌 상태에서 성장해온 김보은의 정신발육과정상의 특징은 어떠하며, 계속된 폭행과 강간·협박·통제가 김보은의 정신상

## 회신을 위해 참고한 자료

-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2,3,4차 공판 재판자료 사본
- 나. 서울고등법원 형사항소 소송기록 사본(92 노 1511)
- 다. 항소이유서(피고인 김보은 작성)
- 라. 항소이유서(피고인 김진관 작성)
- 마. 항소심 1, 2차 공판 기록
- 바. 변호사 배금자로부터 받은 사실관

\* 지난해 은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김보은사건에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김광일 교수가 작성한 김보은의 정신감정서를 소개한다. 이 감정서는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기록을 통해 간접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김보은 뿐 아니라 계속되는 폭력이 그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의 정신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다.

태에 미친 영향은 어떠한가?

질의 1에 대한 의견 ① 정신발육 과정상의 특징 반복되는 성폭행과 신체적 폭행으로 김보은의 정신발육과정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자아성장(自我成長)이 정체되어왔고 정상적인 자아상(自我像) 정립이 불가능했습니다. 반복되는 강간과 성폭행과 신체적 폭행 그리고 잔인한 보복의 위협을 계속 당해왔고 폭행에 대한 공포, 보복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런 김영오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 두 가지의 적응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그 하나는 가해자의 행위를 모방하여 파괴적이고 스스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자의 역할을 하는 가해자 모방적응(加害者 模倣適應)입니다. 이런 적응양상은 폭력을 반복 당해온 남자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자신을 스스로 억압하고 자학적으로 가해자의 요구에 순응하는 자학적 적응입니다. 여성은 거의가 이런 자학적 적응방법을 취하는데, 특히 강간과 폭행을 계속 받아온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없이 자학적 적응을 하게 됩니다. 김보은의 경우 후자의 적응방법을 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해나가는 나름대로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의사를 확인하고 반영하는 능력을 학습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따라서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

습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타인에 대한 확신도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두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아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아성장이 정지되면 폭행과 강간을 당하는 그 원인이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자학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는 친족상간(親族相姦)의 금기(禁忌)를 깬 장본인이라는 수치감 내지는 죄책감마저 생기고 강간을 당한 것 때문에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은 자신의 모습에 대한 수치감과 자기모멸감에 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영상(影像)을 형성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대신 자기는 늘 무능하고 아무 일도 해낼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 자신과 가족의 불행과 위협을 모두 자신의 과오 탓으로 돌려버리는 부정적인 자아상(自我像)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아성장이 정지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와 주변사태의 관계를 판단하고 재정립하는 능력이 없게 되고 외부사태를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매사에 적극성을 상실하고, 사태 특히 성적인 상황과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공포와 무기력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나아가 세상을 보는 안목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김영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기를 자책하면서까지 폭력사태에 적응해왔습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없고 "나는 할 수 없다"는 체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특히 성문제와 폭력과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사결정능력은 물론 사태파악능력까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사회적응능력을 학습하는 기회가 박탈당함으로써 사회적응능력의 상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본래 성폭행과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아상의 결핍 때문에 외부와 적극적인 접촉을 피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법입니다. 김보은의 경우에는 김영오가 일체의 외부접촉을 철저히 금지시켜왔습니다. 이런 금지행위는 자기의 비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범죄은폐행위로서 흔히 가정폭력과 친족상간을 일삼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만, 그런 김영오의 감시행동 때문에 김보은은 더욱 외부세계와 접촉할 기회가 철저히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차단의 결과 가정안의 일, 학교에 가는 일 이외에는 사람을 접촉할 기회가 없었고 철저한 사회박탈(社會剝奪)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차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회성(社會性), 이를테면 동료와의 관계 형성 같은 것이 생길 수 없었고 따라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되어 있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갈 기초적인 능력을 키워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정신발육의 어느 단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분리-독립(分離-獨立)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한 독립적인 개체로서 사회생활을 할 능력이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발생하면 그에 대처해나가는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셋째, 원시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온 것이 눈에 띕니다. 사람은 자기 나이에 적합한 방어기전을 활용하나감으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법인데 김보은의 경우에는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방어체계가 형성되는 학동기(7세~13세)에서부터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기까지 강간과 폭행을 계속 당해왔고 사회박탈도 당해왔기 때문에 성인이 취해야 하는 성숙한 방어체계 즉 욕구충족의 이차성 만족, 외부 가치를 흡수하여 자기내부 정신구조의 일부로 만드는 내재화(內在化)의 기전, 바람직한 외부대상을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는 동일시(同一視)현상, 내부와 외부사태를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차성 사고(二次性 思考), 자기에게 닥친 갈등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해나가는 승화(昇華) 같은 정신기전(精神機轉)이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김보은의 자기갈등 처리방법은 한 동기의 방어체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갈등의 원인을 외부사태에 돌리고 안주하는 투사(投射) 기전과, 자신을 확대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 하는 자학(自虐) 기전과 외부사태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는 자학(自虐) 기전이 혼재 혹은 교대하는 현상, 사태에 직면해서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사고로 대처하는 일차성 사고(一次性 思考), 자기의 고통을 자기로부터 격리시켜서 고통을 덜려고 하는 격리(隔離) 기전 같은 방어기전을 사용하는 유아기적인 적응양상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적응 양상은 김보은이 가해자인 김영오의 가해행위에 대해 대처해나간 방법

에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적어도 그 방면의 사태에 관한 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대처해나갈 능력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넷째, 성적 주체성의 확립이 장애를 받았습니다. 성적 주체성의 확립은 이성의 부모를 존경하고 그를 닮으려는 노력 즉 동일시(同一視) 기전과 자기 성에 대한 긍지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김보은의 경우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김영으로부터 계속 구타를 당하고 사는 무능한 어머니를 동일시할 수 없었고 또 동일시 기전을 활용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성은 모멸적인 것이고 그 성이 존재함으로써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 성에 대한 긍지를 전혀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적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적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여성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확신이 없고 이성을 대할 때도 정상적인 이성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불감증인 김영오의 현상도 이런 성적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것에 기인합니다. 이 성적 주체성이 확립되는 시기는 통상 5세에서 사춘기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김보은의 경우에는 그 결정적 시기에 위에서 서술한 사태에 직면한 것이어서 성적 주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인격 통합과 정신기능의 조화가 깨져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기능에는 지적 기능(I.Q.), 사고기능, 판단기능, 인지기능, 감정기능, 의지기능 등이 있

고, 이들 기능은 상호 조화를 이룸으로써 한 인간의 정상적인 정신활동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보은의 경우는 지적 기능과 인지기능은 그런대로 큰 지장 없이 발달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학과정까지 학업은 계속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그밖의 기능은 상당히 발달이 저해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고기능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보다 비논리적이고 환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으며, 판단기능은 외부사태를 위협적으로 판단하고 위협적인 외부사태에 대해 그 현상과 원인, 대책에 관한 판단능력이 공포와 무기력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감정기능은 고통을 격리시키는 방어기전 때문에 감정표현능력이 상당히 손상을 입어온 것으로 판단되며, 의지기능은 철저한 무기력으로 인해 결단력과 추진력이 마비되었습니다. 이런 정신기능 장애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인격의 통합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가령 기억력이나 숫자계산 같은 것은 성인의 수준에 맞게 제대로 할 수 있으나 감정표현이나 의지력, 판단력은 학동기 수준에 정체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특히 강간과 폭력사태에 직면했을 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정신발육 과정에 미친 영향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강간과 폭행을 당했을 때 정신발달 과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가족 내에서 특히 아버지 혹은 계부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받아온 경우, 가족

내에서 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이 사회와 격리되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김보은의 경우는 이런 열악한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보은의 정신발달 과정에 끼친 영향은 그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겠습니다.

② 정신상태에 미친 영향 반복된 친족간 강간과 폭행의 결과 성인으로서 김보은의 정신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첫째, 보복에 대한 공포가 심합니다. 강간을 당한 초기에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얼마간 지낼 수 있었으나 강간과 폭행이 반복되면서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공포에는 언제 또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도 포함되어 있고 만일 불용하거나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거나 도망을 가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가족도 무자비한 보복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복에 대한 공포는 보복하겠다는 가해자의 위협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충분히 경험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공포는 특히 심각합니다. 보복의 공포 때문에 강간과 폭행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런 공포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철저한 무기력상태에 빠졌습니다. 보복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그런 무기력상태 때문에 강간과 폭행에 관한 한 그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울 능력도 행동할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대처능력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해자의

요구나 폭행에 철저히 순응하는 것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임을 경험으로 터득하게 되고 그런 방식으로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철저히 학습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추행과 폭행을 계속 당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생존하는 수밖에 없다는 절망 속에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처지에서 왜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가 반문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가정폭력과 가족내 강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의 잘못된 통념입니다. 이런 정신상황은 반복되는 폭행과 성추행을 겪은 사람에게 예외없이 나타내는 정신상황으로서, 폭력으로 생긴 “노예의 정신상황” 혹은 “고양이 앞의 쥐”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당해온 경우 그리고 가족 내에서 강간과 폭행을 당해온 경우 정신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심각합니다. 물론 강간과 폭행 이외의 상황에는 잘 적응해나가는 사람도 더러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강간과 폭력에 대해서만은 극심한 공포와 철저한 무기력을 나타냅니다. 꼼짝 못하고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공포의 환경 속에 가해자에게 복종하고 나름대로 타협하면서 노예와 같이 생존해가는 도리밖에 없게 됩니다. 피고인의 경우에는 학업에는 그런대로 적응을 해온 것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외부의 성추행과 폭행에 관한 한 철저한 무기력상태에 빠져 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반복된 성추행과 폭행의 결과 자존심이 극도로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성추행과 폭행에



대해 저항할 능력도 없고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죽이고 싶다”는 생각 자체는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자들은 그런 생각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길 능력은 없습니다. 그만큼 정신능력의 통합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도 자신이 당한 사실을 타인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감정표현도 못합니다. 오히려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기도 하면서까지 위협적인 사태에 순응합니다. 김보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넷째, 성적 주체성이 상실되어 있고 성적 불감증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인 불감증이 있는 것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일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어릴 때 강간을 당하고 그것이 폭행과 함께 반복된 점, 그리고 어머니도 자신과 같은 상대로부터 폭행을 늘 당하고 어머니와 자신이 동시에 한 사람으로부터 성추행을 계속 당해온 처지에서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폭행과 성추행을 반복 받아온 경우는 거의 예외없이 불감증에 빠집니다. 이런 경우 성은 쾌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여성이면 여성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관한 능력 즉, 성적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성관계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

보아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섯째, 김보은의 정신상태는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고통’의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병명은 구타, 납치, 강간, 재해, 천재지변 등 생명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이 나타내는 일종의 특수한 정신질환입니다. 김보은의 경우에는 강간과 폭행을 어릴 때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그 정도가 가혹하고 반복적인 것이어서 증상 정도가 극심하며 또한 만성화과정을 밟은 것으로 봅니다. 이 병의 주된 증상은 ① 죽음의 공포 재경험 ② 정신적 둔마 ③ 자율신경의 과민 ④ 우울증상 ⑤ 철저한 무기력 등입니다. 이런 증상이 모두 김보은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병명을 가지고 있는 김보은은 인격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정서기능의 여러 분야가 통합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지적기능과 인지기능은 그 정도로 보존되어 있으나 특히 감정기능과 의지기능 그리고 행동기능은 어린이 수준에 정체되어 있어 이들 기능간의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합니다. 만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한 증상인 김영오에 대한 공포와 무기력은 김영오가 살아있는 한 더욱 악화일로를 밟을 것이며 그가 죽은 후에도 거의 평생 잔존해 있게 마련이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및 사회생활에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성립시켜 나갈 수가 없게 되며 평생을 공포와 무기력으로 생존해나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위해서는 아주 장기적인 때로는 평생동안 정신치료가 요망되는 상태입니다. 그 정

신치료는 손상된 자아상을 재건하고 정체된 인격구조를 분석-재정립함으로써 독립된 한 인간으로 재구성하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가 되겠습니다.

영오에 대한 김보은의 공포가 더욱 가중되었고 자기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처절한 절망에 완전히 빠지고 마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질의 2 김보은이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은 어머니 김영자뿐인데 김영자는 딸 김보은이 의붓아버지 김영오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김영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딸 김보은이 김영오의 성노리개가 되도록 희유·설득·조장·방치하여 김보은이 어머니와 함께 도망가거나 김영오와 이혼하도록 수차 요구하는 것을 뿌리치고 김보은의 고통과 하소연을 외면하고 무조건 김보은에게 참고 현실에 적응하도록 해온 어머니 김영자의 태도가 김보은에게 끼친 영향은 어떠한가?

질의 2에 대한 의견 최후의 의지처였던 어머니 김영자의 이런 태도는 김보은으로 하여금 최종적인 절망에 빠뜨렸을 것이 틀림없고 김보은의 무기력을 촉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워낙 이런 강간·폭력 희생자는 자존심이 상해서 혹은 보복이 두려워서 당한 사실을 자진해서 타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머니에게 김보은이 늘 숨겨오다가 어떤 계기에 어머니가 알게 되고 그 사실이 서로 말로써 오고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어머니마저도 김영오를 몹시 두려워해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김

질의 3 위와 같은 어머니 김영자의 태도에 대한 정신의학적 평가는? (친딸에 대해 어머니로서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는지)

질의 3에 대한 의견 어머니 김영자 역시 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남편의 폭행으로 보복에 대한 공포와 철저한 무기력상태에 빠져 있는 폭력의 희생자였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으로부터 계속적인 폭행을 당해온 부인의 정신상황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남편으로부터 계속 구타를 받아온 여성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특수한 정신질환에 걸리게 마련인데 이 질환은 ① 죽음의 재경험이라 표현되는 극도의 공포, 보복의 공포 ② 정신적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적 둔마 ③ 자율신경의 과민상태 ④ 우울증상 ⑤ 극도의 무기력상태 등을 나타냅니다. 가해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공포에 빠집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이 대머리인데 길 가다가 대머리 남자만 보아도 공포에 젖어 기절해 버립니다. 공포뿐 아니라 철저한 무기력 때문에 매사에, 특히 폭력 상황에 대해서는 그 대처방안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고 폭력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마련입니다. 또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것에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김영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딸에 대한 남편의 강간과 폭행에 대처할 아무런 능력도 갖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에게 닥친 문제도 대처해 나갈 능력이 없고 딸의 문제를 조연해줄 능력은 더구나 없었습니다. 딸인 김보은의 처지와 자기의 처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상담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영자도 김영오로부터 사회박탈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사 알고 있었던 경우라 해도 그렇게 행동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철저한 무기력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방법은 하등의 효과가 없음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는 동안 이미 무서운 보복이 가해지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딸도 죽지 않고 생존해가는 방법은 그런 김영오의 폭력과 반복적인 강간에 순응하고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영자의 정신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나아질 것이다” 혹은 “유학가면 될 것이다”라고 딸에게 말했는데 이것은 통상 현재 구타상황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막연하게 장차 좀 나아지겠지 하고 헛된 희망을 가지면서 폭력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위하고 있는 구타당하는 아내의 무기력한 정신상황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속고 사는 것입니다. 폭력은 그 성질상 교정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폭력에 관한 한 그러합니다. 김영자의 말은 비현실적

이고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자위하고 있었으며 그런 희망사항을 딸에게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영자가 무책임하다거나 간교해서 딸의 희생을 통해 자기의 안전을 추구했을 것이라는 통념은 정말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폭력의 노예화과정을 전혀 모르는 소치입니다. 가정폭력을 구사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가족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자기 폭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며 자기 폭력 범죄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자도 폭력의 한 희생자이고 폭력의 노예가 된 정신상황을 지니고 있었음을 필히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김영자의 정신상태도 딸 김보은과 동일합니다.

질의 4 김보은의 경우 어머니 태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도망가거나 하여 성행위 강요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와 대학생이 된 후에도 김영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성노리게 생활을 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질의 4에 대한 의견 질의 1에 대한 의견에서 언급했듯이 김보은의 정신상태는 반복되는 강간과 폭행으로 생긴 보복에 대한 공포와 철저한 무기력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처할 정신적인 힘을 전혀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이라는 표면적인 자격만으로 김보은의 정신상태를 어떤의 정신상태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는 지적기능과 인지기능은 성인의

것이지만 감정처리와 의지기능 그리고 행동기능은 어린이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태 특히 폭력과 강간사태 앞에서는 아무런 대처방안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더욱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계속 강간과 폭행을 당해온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실제 보복의 공포 때문에 도망도 못갑니다. 만일 김영오의 요구를 거절하는 날에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협박을 계속 받아왔고 또 매질을 통해 무서운 보복을 받아온 경험을 통해 보복의 두려움이 김보은의 정신상황을 지배해왔습니다. 또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커서는 경찰서나 상담기관에 호소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무기력과 보복의 공포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능력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발설하면 죽인다는 협박을 받아온 처지에서는 경찰서나 상담소에 발설하면 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말 무서운 보복이 가해질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포에 오래 젖어 있다 보면 정신적인 무기력상태가 웅당 따르게 되는데 고통스런 상황에서 자기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강간과 폭행을 계속 받아온 사람은 예외없이 폭력의 노예화과정을 거쳐 ‘노예의 정신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지만 벗어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을 경험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이 된 후에도 그런 노예의 정신상황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남습니다. 그만큼 강간과 폭행을 더 많이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 폭행자로부터 더 ‘길들여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폭력을 가정에서 행사하는 사람은 예외없이 보복을 함으로써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에 그런 사실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김보은이 성노리개의 역할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지독한 고통이라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보복의 두려움과 정신적 무기력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언젠가는, 어머니가 말했듯이 대학에 가면 김영오의 그런 잔학한 행동이 좀 나아지겠지 혹은 유학을 가면 김영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하고 막연하게 헛된 희망을 가지고 속아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서도 김영오의 행동은 변화가 없었고 유학을 보내줄 가망도 없었습니다. 김보은에게는 김영오의 성노리개 노릇을 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강간과 폭행을 반복하면서 강간과 폭행 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도 가정폭력의 70%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생자를 길들이는 한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한 인간을 폭력의 노예로 만드는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벗어날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어머니도 같은 희생자여서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복형제들은 김영오의 포악한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운 모방적 적응을 해온 경우여서 도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김영오와 같은 꺾박자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기숙사 동료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용기를 내서 한 구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몸부림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들도 김영오를 무시위하었고 결국 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김보은으로 하여금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최종적인 절망에 빠지도록 한 것입니다.

질의 5 김보은이 9세 때 성추행을 당하고 12세 때 강간을 당한 후 대학 2년이 될 때까지 9년간을 성노리개로 되어오는 동안 김보은이 김영오와 성관계에서 성적 쾌락을 느낄 수 있었는지 여부와 김보은이 불감증에 걸린 이유와 타당성, 성의 공포 정도는?

질의 5에 대한 의견 김보은이 진술한 대로 성적 불감증이 있습니다. 강간과 폭행을 계속 당한 여성의 경우 그 결과로 불감증이 생기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그런 일을 계속 당해온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강간과 폭행을 계속 당한 사람은 예외 없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질환에 걸리게 되는데 이 병의 필수증상의 하나로 '공포의 재경험'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간이나 폭행을 당

할 때와 비슷한 상황 이틀테면 가해자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 성행위가 예상되는 상황 같은 때 다시 떠올라 극도의 공포를 느끼는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김보은의 경우 가해자와 성적 접촉이 예상되거나 행위에 옮겨질 경우 극도의 공포에 짓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성적인 쾌감은 생길 이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다른 남성과의 성적 접촉에서도 쾌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강간과 폭행을 해온 가해자와 다른 남성을 동일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공포가 되살아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의 대상이 가해자인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와 불감증이 있으면서도 김영오의 성적 대상이 되어온 것은 질의 4에 대한 의견에서 언급했듯이 보복의 공포와 무기력 때문입니다. 김보은처럼 강간과 폭행을 당해온 경우 성은 쾌락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와 고통의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질의 6 김보은의 정신상태 및 발육특정상 김영오를 죽이려고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본인 또는 애인 진관을 시켜).

질의 6에 대한 의견 김보은의 경우 김영오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그것은 비현실적인 막연한 감정일 뿐으로 김보은의 유아기적인 감정처리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생각하거나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정신적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한 피해를 당했을 때 죽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심리의 당연한 소산입니다. 그러나 행동에 옮기는 것은 문체가 다릅니다. 김보은의 경우 보복의 공포 때문에 가해자만 생각해도 심한 공포에 젖고 철저한 무기력 때문에 자기에게 닥친 고통스런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는 일도 불가능한 정신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해자를 죽일 방법을 계획하는 일 자체는 더 불가능합니다. 행동에 옮길 능력은 더욱 없었다고 봅니다.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서는 누구를 시켜 살해하도록 하는 행위 자체도 불가능해집니다. 남편으로부터 계속 구타를 당해온 부인의 경우 맞으면서 그냥 꺾 못하고 있게 마련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게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짜는 부인이 있습니다. 또 실행한 경우도 아주 드물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어릴 때 한 번 강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겨 가해자를 찾아 살해한 일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계속 한 사람으로부터 강간과 폭행을 당해온 경우 살인을 계획하거나 실행했다는 예는 희생자클리닉을 10년간 운영해온 저의 경험에서 보지 못했고 과거 10년간 강간폭행 희생자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과거 30년간 발표된 국제적인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오를 김진관이 살해하는 현장에서 김보은이 취한 행동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살해하는 현장 그 순간에 김보은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사실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무기력 때문에 특히 가해자인 김영오가 있는 자리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라고 표현되는 정신상태가 되게 마련이고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장면이 폭력적인 장면이었으니 폭력 앞에서는 아주 무기력해지는 것이 폭력피해자의 정신상황입니다. 그런데 살해사건이 나자 겁에 질려 강도로 위장하자는 제의를 김진관에게 김보은이 한 것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나 김진관을 구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위장도 김보은이 지금까지 어떤 외부 사태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손상된 자기상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또 지금까지 어머니를 위해 자기가 희생해왔던 경험(적어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에서 학습된 자동적인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의 노예가 된 정신상태의 사람은 즉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기지를 가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지도 계획성이 전혀 없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것이 됩니다. 강도로 위장한 김보은의 방법도 영성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보은의 이상과 같은 정신상황 특히 폭력 앞에서, 살인이 저질러지는 상황 앞에서 그리고 가해자의 요구에 직면해서 취하는 김보은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과거 당해온 가해자에 대한 경험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해지는 행동임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질의에 의견을 드립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과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자료

# 시기별 국가보안법 적용 통계

민변 편집부

## 1. 법 제정에서 제4차 개정(1948. 12~1961. 5)까지의 시기

###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미군정에 이어 1948년 8월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제주도 4·3사건이 일어났으며, 다시 이 사건을 진압하라는 출동명령을 받은 여수·순천지구 주둔 제14연대와 그 인근 주민들에 의해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남로당과 그 외곽조직은 이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신생정부는 내란행위자 내지는 남로당원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법무부, 『법무부사』, 1988, 134쪽 참조). 이것은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의 적용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자료들과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윤곽을 추측해볼 수 있을 뿐이다. 다음은 이 기간 동안 『동아일보』와 『한국언론연표』(계훈모,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7) 등에 게재된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와 통계들이다(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제2권, 역사비평사, 1992, 16~18쪽 및 56~59쪽).

- 1948. 12. 1 남로당 간부 40명 문초중
- 12. 13 수도권구 경찰청, 문장사 사장 김연만과 편집책임자 정지용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
- 1949. 1. 19 국가보안법 실시 후 서울시 경찰국 관내 '노력인민' 비밀아지트사건 외 검거 18건

- 2. 15 제엄령 해제된 광주지검관내 2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이에 총 44건 114명 수리 건수 가운데 42명이 보안법위반자로서 보안법 해당이 수위
- 3. 22 국제신문 사회부장 김현재, 기자 최기덕 구속, 사장 이봉구, 주필 송지영 불구속 송치
- 5. 3 공보처, 반국가적인 보도태도와 파괴 음모적인 공산계열과 같은 신문제작의 이념을 일척하기를 경고하면서 서울신문 정간처분
- 6. 6 공산당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서명한 남북통일운동을 선전하는 기사를 실어 공산당을 선전하였다는 이유로 화성매일신문 폐간 처분
- 5. 20~6. 20 국회의원 이문원·노일환(정역10년)·김약수·박윤원(정역 8년)·김옥주·강옥중·황윤호·김병희(정역6년)·오택관(정역4년)·이구수·최태규·신성근·서용길·배중혁(정역3년), 변호사 오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사』, 1985, 113~115쪽; 이진복, 『한국의 인권과 안보정책』, 187쪽;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357쪽, 속칭 국회프락치사건)
- 6. 21 문학가동맹원 송기성, 김동희, 유종령, 백인숙, 채성하, 유순자 입건
- 7. 11 보안법 적용자, 정삼월간에 2천  
나날이 긴급하여 가는 시국을 틈타서 국가를 쪼먹고 갖은 악질적인 행동을 감행하여 치안을 교란시키는 자들을 치안당국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년 정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이러한 치안교란 및 파괴행동을 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수는 도합 5백5십1건이고 그의 인원은 2천1백8십9명이고 기소된 건수는 2백7십1건이고 그의 인원은 5백6십명이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건수는 1백2십6건이고 인원은 1천4십6명이다. 이 통계에 의하면 점차로 국가보안법 위반건수가 늘고 있는 경향으로서 2월의 1백7십건에 비하여 3월에는 그보다 2십1건이나 증가한 1백9십1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 7. 18 6월에 서울상대 강사 박천석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8. 2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출입기자 중 서울타임스 최영식, 고려통신 이문남, 조선중앙일보 허문택 등을 남로당 가입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수감하고 국도신문 심래섭, 자유신문 박인환, 공립통신 정중완을 불구속 입건
- 8. 24 보안법 영장발부자 국회의원 이문원 등 19명, 범조계 김영재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 11명, 언론계 김성호 등 31명
- 9. 20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금속노조 마포공작소분회 조합원 이경복, 전평가입과 임금인상 파업참가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구속(대검찰청 수사국, 『좌익사건실록』 제4권 218쪽 이하;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266쪽)
- 10. 6 서울시경, 남로당 특수정보부 신문기자 프락치사건 관련자 고흥상의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송치
- 11. 14 내무부 사찰과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현재까지 14일 동안의 남로당 자수기간 중 자수자 2,300명
- 11. 25 남로당원 자수 서울시내만 4천 명 돌파

“이 법의 시행에 의해 반미·반정부의 정치·언론활동, 개인적이고 우발적인 언동까지도 처벌받게 되었다. ‘국제연합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제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 역사부회 역, 김희일 저 『아메리카조선침략사』, 雄山閣, 1972. 6. 224쪽; 고준석, 『남조선정치사』, 자植書房, 1980. 2. 150쪽; 한국현대사연구회, 『알기쉬운 한국현대정치사』, 공동체, 1988. 139~140쪽). 또한 “그(국군) 정보기관은…… 일반인에 대해서 수사도 하고 군에 대한 수사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정보기관과 헌병이 협력해서 숙청한 군인으로 말하면 무려 8~9천 명에 이르는 공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공적을 이룬 것은 좋은데…… 그것이 차차 자라서 좌익계열을 박멸하는 이외에 일반형사범에 이르기까지 정보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하는 것도 있고 사람을 살상한 것도 있었습니다”(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회의록, 1378~1379쪽, 권승렬 법무부장관의 ‘헌병 및 국군정보기관의 수사한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06쪽). 1949년 남한의 20세 이상 인구 9,716,309명과 위 입건·구속자 수를 비교해보면 이 법이 당시 정부의 통치수단 중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1년에 10만 건 정도를 검사가 기소하는데 그 중에서 8할이 좌익사건입니다……1년에 8만 건 가까운 사건에서 3할 가량이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5만 건”(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회의록, 1390쪽, 권승렬 법무부장관; 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08쪽)의 국가보안법사건을 대법원이 처리해야 했다. 이러한 업무의 폭주 때문에 “1950년 12월 7일에는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이 제정·공포되어 총원하였으며, 1953년 8월에 실시된 공무원 감원조치에서도 판사와 검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서울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사』, 1985. 85쪽; 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07쪽). 단정수립 당시 검사의 정원은 163명(검찰사무직 공무원은 586명)이었고 1956년 10월 검사정원법의 제정과 함께 검사정원이 190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1949년 12월부터 검찰청법 제26조에 의거 법무부 직원으로서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검사를 겸임하는 ‘정원(법)외 검사’를 두어 별도의 정원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는 공식 정원보다 더 많았다(법무부, 『법무부사』, 1988. 51~52 및 154쪽). 형무소도 과포화상태였다. “각 형무소에 있는 수용자가 지금 너무 정원 이외에 넘친다…… 광주형무소에 600명 정원에 1,200명 가량, 서대문형무소에 2천 명에 4천 명, 마포에 몇 배…… 대전형무소에 1,200명인데 3,000명”(제헌국회 제6회 제28차 회의록 오석주의원 발언; 박원순, 앞의 책 제1권, 107쪽)이나 되었다. 이들 수용자의 8할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등 범죄가 격증하여 형무소 수용인원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0월에 ‘형무소 설치에 관한 건’을 제정·공포하여 부천과 영등포에 형무소를 신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형무소 직원도 계속 총원하여 정부수립 당시 3,372명에서 한국전쟁 전후하여 3,605명으로 증가하였다(법무부, 『법무부사』, 1988. 53~57쪽; 박원

순, 앞의 책 제1권, 107쪽). 또 당시 법무부 차관이 “국가보안법사건에서도 집행유예와 보석할 수 있다”(『동아일보』 1950년 4월 7일자)고 발표한 것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폭주 때문에 늘어난 형무소 수용인원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이 법의 적용실태가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엄청난 수치는 당시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단체와 국민이 사실상 이렇듯 많았거나 아니면 법 자체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하여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킬 것이다.

이승만정권은 국가보안법사건과 적용자수가 폭주함에 따라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법의 개정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하였다. 당시 권승렬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개정안 제안이유 설명에서 심급제와 관련하여 “이것이 오래면 오렐수록 국가에서는 큰 곤란을 보고 또 형무소는 터질 지경이오…… 좌익분자를 속히 없애버리고 건국을 속히 하려면 2심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습니다”(제헌국회 제5회 제56차 회의록, 1389쪽)라고 발언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2조 내지 제18조)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발전한다. 이러한 개정 중에서 특히 보도구금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다. 보도구금제의 실질적 구상자인 오재도씨의 말에 따르면 사상전향되었다고 판단하여 석방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국민보도연맹’의 맹원수는 1950년 초반에 30만 명(서울시의 맹원수 19,800여 명, 『동아일보』 1950년 5월 5일자)이 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김태광, 『해방 후 최대의 양민참극 ‘보도연맹’ 사건』, 『말』 1988년 12월호, 20~27쪽;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18쪽).

2) 한국전쟁에서 4·19 민주당정권까지의 기간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전선의 확대와 반복된 이동은 이른바 '부역자'를 양산하게 하였다. 부역자는 일반법인 형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했다. 그러나 전 시하에서 더욱 엄중한 형을 보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선고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이 1950년 6월 25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어 같은 해 10월 4일 군·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 11월 13일 현재 검거된 전국의 총 부역자수는 48,909명이며 도별 검거 인원, 송치 및 석방인원은 다음과 같다(박원순, 「전쟁부역자 5만여 명 어떻게 처리되었나」, 『역사비평』 1990년 여름, 185~187쪽; 『동아일보』 1950년 11월 16일자).

	검거인원	송치수	석방자수		검거인원	송치수	석방자수
서울	15,948	3,466	5,155	경북	2,886	74	1,737
경기	11,129	2,474	5,136	경남	2,786	1,931	-
강원	2,169	804	-	전남	2,780	132	1,041
충남	2,993	-	2,313	전북	5,596	943	1,874
충북	955	-	-	제주도	1,667	653	637
				합계	48,909	10,477	17,893

한국전쟁 전기간 동안 자수한 자와 검거된 자를 포함하여 당국에 의하여 인지된 총 부역자수는 550,91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자수자는 397,090명, 검거자는 153,825명이었다. 또한 위 인원 속에 북한군 1,448명, 중공군 28명, 유격대 9,979명, 노동당원 7,661명도 포함되어 있었다(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사』(II), 1973, 547쪽; 박원순, 앞의 글, 185쪽).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형선고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서울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 25일 현재 867명의 사형선고자가 집계될 정도였다(『동아일보』 1950년 11월 25일자;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21쪽).

한국전쟁 휴전 후 남한에서는 친미반공이데올로기가 확고하게 정착된다. 사회전체가 반공이데올로기로 뒤덮여 있었으나 일반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하게 남았고 또한 보수세력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을 압도하고 있었으므로 그 폐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든 '진보적인 것'은 '공산주의'와 동일시 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의구심도 제기되지 않았다. 이승만은 1954년 4사5입개헌으로 연임의 길을 열었으나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여 보수정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이승만정권은 조치를 취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진보당사건이 발생하였다. 진보당의 조봉암,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등 1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검거되고, 조봉암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59년 7월 31일 사형집행을 당했다.

그러나 그 후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언론의 부정선거 폭로 등에 힘입어 야당이 선전하고, 경제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삭감되어 실업이 증가하는 등 계속 정권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의 개악으로 이 위기를 넘기려 하였다. 이것이 바로 무술경관을 동원하여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파동을 통하여 처리한 국가보안법 제3차 개정이다. 이 제3차 개정법, 특히 제17조 제5항의 인신혹란죄는 주로 언론과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귀를 틀어막는 데 사용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59년 경향신문의 폐간이었다. 경향신문은 이미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사실과 "여적"이라는 칼럼 등으로 정권의 심기를 매우 어지럽혀 놓고 있었는데 이승만정권은 1945년 4월 5일자의 "간첩 하모 체포"라는 기사를 문제삼고 나왔다. 이 기사가 미리 발표되는 바람에 체포된 간첩과 접선하려던 또 다른 간첩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향신문은 폐간조치되고 이 기사를 취재한 어임영·정달선 기자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오소백 사회부장·이관구 주필은 불구속 입건되었다(박원순, 앞의 책 제2권, 63쪽).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막걸리 보안법' 사건은 부지기수로 발견된다. 대법원은 술을 마시면서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다가 국가보안법상의 헌법기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선우만혁 피고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형법만을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동아일보』 1960년 4월 1일자; 박원순, 앞의 책 제2권, 23쪽).

4·19봉기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대체로 자제되었으며 1960년 6월에는 제4차 개정을 통하여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이 제4차 개정법은 '불고지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오히려 개악된 측면도 갖고 있었다. 『동아일보』 1960년 9월 29일자와 1961년 4월 30일자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부산지검 정보부 한옥신 부장 검사 불고지혐의로 조사", "연세대 오화섭 교수 불고지혐의 구속"(박원순, 앞의 책 제2권, 25쪽).

그리고 나아가 민주당정권은 국가보안법 외에 반공법을 새로이 제정하려고 시도하였다. "구법 제17조 이적선전조항, 제19조 은거조항, 제21조 편의제공조항 등의 폐지로 면소·무죄·공소기각판결과 불기소사건이 빈발"(『동아일보』 1960년 6월 10일자) 하자 1961년에 민주당정권은 '반공임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려 기도하기도 하였다.

2. 반공법 제정 및 제5차 개정(1961. 5~1980. 12) 시기

1) 혁명검찰부·혁명재판소와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쿠데타 3일 후인 1961년 5월 19일 반공법의 모태가 된 '포고령 제18호'를 발표하여 공산주의 활동의 철저한 규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이어 1961년 6월 22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6조의 특수

혁명검찰부가 처리한 사건의 죄명별 직업별 통계

직업 죄명	장차관 도지사 중앙 국장급	국 회 의 원	공 무 원	정 당 인	사 회 단 체	언 론 인	실 업 인	학 생	군 인	경 찰 관	기 타	계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 36	29 42	10 26	22 38	15 23	1 2	3 13	- 1	1 2	42 131	20 82	163 396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선거 관련 살인방화 등	- 3	1 2	2 3	3 3	- 1	- 8	4 8	- -	- -	14 87	24 104
	제3조: 특수밀수	- -	- -	- -	- -	- -	3 3	- -	- -	- -	7 63	10 66
	제4조: 국사·군사 에 관한 독직	16 20	7 9	5 20	- -	- -	- 11	- -	12 25	1 11	- 4	41 100
특별법	제5조: 반혁명행위	4	-	-	-	1	2	4	1	22	1	14 49
	제6조: 특수반국가 행위	1 4	3 8	- -	77 212	113 299	7 16	- 1	17 48	4 4	- -	3 16 225 608
	제7조: 단체적 폭력행위	- -	- -	- -	- -	- -	3 3	- -	- -	- -	- -	12 30 15 33
부정축재처리법	7 -	5 -	5 -	- -	- -	- 3	- -	- -	6 -	1 -	- -	24 27
계	48 72	45 69	22 57	102 253	129 324	10 25	13 39	22 58	45 110	45 144	70 323	551 1474
백 분 율	5.0	4.7	3.9	17.3	22.0	1.7	2.6	3.9	7.2	9.8	21.9	100

\* 위쪽 수치는 사건수, 아래쪽 수치는 인원수

혁명검찰부가 처리한 사건의 죄명별 구형형기별 통계

구형량 \ 죄명	부 정 선 거 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부 정 축 재 법	백 분 율
		제 2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유 기 징 역 형	6월	1							1 0.2
	1년	1							1 0.2
	1년 3월	2							2 0.5
	2년	9						1	10 2.2
	2년 6월		2						2 0.5
	3년	9	10		2			3	24 5.9
	3년 6월	3							3 0.7
	3~4년		2						2 0.5
	4년	1	3						4 0.9
	4년 6월							1	1 0.2
무 기 징 역 형	4~5년		1						1 0.2
	5년	9	5	1	4	2	26	3	50 11.2
	5~7년						2		2 0.5
	6년	5		1			6		12 2.7
	7년	13	8		6	2	37		66 14.8
	8년	1		6			4		11 2.3
	10년	21	1	3	7	11	37	2	82 18.1
	12년	3	1		1	27			32 7.2
	15년	17	3		6	3	24		53 11.9
	20년				2	5		2	9 2.0
계	95	36	11	28	23	163	2	10	368 82.7
무기징역형	3		3	6	9	12			33 7.4
사 형	10		5	1	8	16	4		44 9.9
계	108	36	19	35	40	191	6	10	445 100